

# 2020년 제2차 온라인 연구윤리포럼 질의·응답

## I. 주제발표 관련 질의

### 주제발표 1

#### 최근 연구윤리 이슈와 한국연구재단의 대응 -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장

Q1-1	연구윤리지원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지원하나요?	P.1
Q1-2	연구윤리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Q2	연구윤리의 정책과 결과 평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행되는 윤리학 혹은 도덕철학의 의무적 이수라 생각합니다. 동·서양 윤리학이나 관련된 이슈나 쟁점들을 익힘으로써 연구자들이 선제적으로 윤리의식을 갖고 신중하게 연구를 수행할 듯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의무적 윤리교육 이수에 관해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계획된 정책이 있는지요?	P.1
Q3-1	연구재단 지원과제의 결과물이 아닌 연구물의 연구부정행위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지원 센터를 통해 조사가 가능한가요?	P.1
Q3-2	연구윤리지원센터가 한국연구재단 내에 설치되다보니,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연구부정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조사지원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재단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주실 수 있나요?	
Q4	'연구가 범죄다'라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자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규정 및 연구윤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P.2
Q5	한국연구재단 지원연구사업의 연구윤리와 학교 내의 연구윤리위원의 역할, 관계에 대해 질문 합니다.	P.2
Q6	연구윤리지원센터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또는 추구해야할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P.2
Q7	선진국 수준을 위한 현 시점에서의 연구윤리를 위한 재단의 노력은 무엇인가요?	P.3
Q8	등재학술지 발간과정에서의 연구윤리 표준화방안은?	P.3
Q9	연구윤리지원 센터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P.3
Q10	연구윤리지원센터 3개 팀 별 전문성 확보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방향은 무엇인가요?	P.4
Q11	EU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가운데, EU 사업에 선정된 연구자가 재단의 한EU 공동연구지원 사업을 통해서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 EU 측에서 연구자의 기관이 윤리적으로 검증된 기관인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요구한다는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윤리센터가 국내연구자 연구과제 및 기관에 대한 윤리적 검증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는지요?	P.4
Q12	앞으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연구윤리지원센터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지?	P.4
Q13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받을 경우 한국연구재단으로 부터 처해지는 후속조치는 무엇인가요?	P.5

## I. 주제발표 관련 질의

### 주제발표 2

#### 선진국 수준의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방안 - 이인재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

Q14	학부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입니다. 예비교사 대상 연구로서 학생들의 과제물들을 자료로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을 때,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P.5
Q15	연구윤리에 대한 감각 없이는 사실 형식적 위원회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이 많이 미흡한 현시점에서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연구윤리, 실천을 위해 어떤 방안이 효과적인가요?	P.5
Q16	대학교 차원에서 인문사회 분야에는 단독연구를 중시하는 방향이 연구업적 규정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요?	P.6
Q17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연구부적절행위(QRP)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가 있었습니다. QRP의 사례나 예시가 있나요?	P.6
Q18	학술대회 초록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같은 학회에 논문으로 투고하는 것도 표절인가요?	P.7
Q19	학위논문에 앞서 작성한 소논문에 사용된 데이터 일부를 이후 학위논문에 사용해도 가능한가요?	P.7
Q20	앞으로 학회 차원에서 나아가야 할 연구윤리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P.8
Q21	학생 참여 설문에서의 연구 윤리는 어떻게 되나요?	P.8
Q22	박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자기 표절에 빠지지 않기 위한 대응책이 있나요?	P.9
Q23	석박사 학위 논문을 저널 출판에 활용 시 어느 정도 수정이 되어야 연구윤리에 위배가 되지 않나요?	P.9
Q24	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는 경우도 자기표절에 해당하나요?	P.10
Q25	학술지 발간 시 연구윤리 확보 또는 증명 방법이 있나요?	P.10
Q26	선진국 수준의 대학 연구윤리에 대한 특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P.10
Q27	각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및 의결사항의 이행 방안이 있나요?	P.11
Q28	수업 중 진행한 학생 성찰일지 및 소감문 등(익명 작성)의 연구 활용 가능한가요? 또한 동의서 취득이 필요한가요?	P.11
Q29	해외 대학의 연구윤리 교육현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대학에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P.12
Q30	최근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연구 진행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P.12
Q31	대학 현장에서 연구윤리 인식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P.12
Q32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작성과 연구윤리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및 지도방법이 있나요?	P.13
Q33	연구윤리가 학문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 것인가요?	P.13
Q34	대학교수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 및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P.13
Q35	대학 자체 연구윤리 규정 제 개정 시 필수 반영사항 및 고려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요?	P.14
Q36	학위 논문 중 일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표절인가요?	P.14
Q37	학회마다 학교마다 재단마다 연구윤리규정이 모두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학교나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중 가장 상위규정이 무엇인가요?	P.15
Q38	각 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만 운영되는 기구인가요?	P.15

## I. 주제발표 관련 질의

### 주제발표 3

#### 출연연의 연구현장 인식에 기반한 연구윤리 선진화 방안

- 남승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회장

Q39	연구자가 소속한 기관 내에 연구윤리 모니터링 및 심의 등을 자체적으로 하여 국내 대부분의 연구관련 기관들이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 의식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16
Q40-1	국가기관에서 연구자로 수집을 위해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구한 자료를 연구자 이외 다른 사람이 요청 시 볼 수 있나요?	P.16
Q40-2	국가기관 내에서 사용된 정보 활용 관련 본인 이외 지도자가 원본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나요?	P.16
Q41	지자체에서 공동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개인 연구자가 그 결과물, 아이디어를 학술 논문으로 게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은가요? 문제가 된다면 문제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요?	P.16
Q42	다른 기관에서 연구데이터 수집 시 유의사항으로 어떤 부분이 있나요?	P.17
Q43	혁신법 제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제도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P.17
Q44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과제는 시작할 때 IRB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하나요?	P.18
Q45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원방안이 있나요?	P.18
Q46	규제 중심의 연구 윤리에서 벗어나 현장 연구자 중심의 연구 윤리 활성화를 위한 출연연의 구체적 방안의 예시가 있나요?	P.19
Q47	연구 윤리 선진화를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P.19
Q48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좋은 정책과 바람직한 방향은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장연구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일부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특히 규제보다는 사전예방 및 교육, 현장 연구자중심의 가이드라인 제시, 연구 구성원들 간의 소통(예, 학생연구원과 선임연구원) 등의 이슈가 (연구자입장에서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이나 추후 연구/실행방향 등이 계획되어있나요?	P.20
Q49	국가에서 시행하는 IRB는 무엇이 있나요?	P.20

## II. 연구윤리 관련 기타 질의

Q50	코로나19로 설문조사 등이 힘들어졌습니다. 혹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연구를 했을 때, 서면 설문지를 활용했을 때와 달리 연구윤리에 지적받을 만한 문제가 발행하나요?	P.21
Q51	인터넷 상의 자료를 인용할 때는 참고문헌에 어떤 방식으로 표기하나요?	P.21
Q52	논문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이 윤리 면에 저촉되나요?	P.22
Q53	조사연구에서 온라인 자료수집 시, [연구대상자의 전자동의]절차를 간단히 받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P.23
Q54	실험 대상이 그린 그림 또는 사진, 실험 대상이 실험에 참여하여 작업 중인 사진을 찍어 연구에 활용할 경우의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나요?	P.23
Q55	연구부정의 제재를 강화하다 보니 자율성 존중에 대한 부분이 억압되기에 학문의 다양성과 자율성 존중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이 있나요?	P.24
Q56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실험 노트를 적는 것보다 온라인 상의 편리한 노트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윤리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P.24
Q57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 (주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최소기준 등)이 따로 있나요?	P.25
Q58	어떤 등재지, 대학에서는 IRB 심의를 하지 않는 곳도 있던데 IRB의 공공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P.25
Q59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자의 윤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P.26
Q60	온라인 강의 시 교재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P.26
Q61	교재의 온라인 강의 사용에는 윤리적 문제가 없나요?	P.27
Q62	성인대상 학습자 연구 시의 연구윤리가 따로 있을까요?	P.27
Q63	연구윤리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P.28
Q64	자기표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P.28
Q65	연구진실성 검증 본조사 시 전문가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P.29
Q66	질적연구시 IRB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가 있나요?	P.29
Q67	실험연구에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어느 선까지 윤리적으로 수용이 되나요?	P.30
Q68	해외 전문기관 연구윤리전담조직의 현황 및 성과는?	P.31
Q69	연구자 자녀의 논문 저자 참여 여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P.31
Q70	4차 혁명과 관련된 연구윤리는 무엇이 있나요?	P.31
Q71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미술치료에서의 윤리 제한은 무엇인가요?	P.32
Q72	공동 제1저자(제1저자가 2명)가 있을 수 있나요?	P.32
Q73	학생대상연구에 심의면제가 가능한가요?	P.32
Q74	연구윤리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상위 기준이 무엇인지요?	P.33
Q75	자기논문표절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P.33

## II. 연구윤리 관련 기타 질의

Q76	사회과학연구에서 다량의 설문지조사를 이용한 연구방법 시 IRB 승인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P.34
Q77	시약이나 장비 평가 시 식약처 임상시험 관련 절차가 필요한가요?	P.35
Q78	다른 나라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처벌 법률 상황은 어떤가요?	P.35
Q79	이차 자료 사용 시 면제 IRB를 받아야 하나요?	P.36
Q80	IRB가 직능단체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연구를 불허하면 이것은 IRB가 연구윤리를 어긴 것 아닌가요?	P.36
Q81	올바른 연구문화를 위한 연구윤리와 생명윤리의 상호보완성은 무엇인가요?	P.37
Q82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설문조사인 경우 심의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P.37
Q83	사람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도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P.37
Q84	경험사례 연구할 때 연구 윤리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P.38
Q8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자료의 활용과 저작권은 어디까지 허용가능한가요?	P.38
Q86	논문 표절 기준과 검사방법이 있나요?	P.39
Q87	임상연구에 있어서 개인정보 열람의 범위와 활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P.39
Q88	paraphrasing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구체적인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	P.40
Q89	해외자료 재인용과 관련해서 윤리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이 따로 있나요?	P.40
Q90	첨생법과 관련된 연구윤리 이슈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P.41
Q91	연구윤리와 관련한 이슈를 연구자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방안은?	P.41
Q92	논문 유사도 검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P.42
Q93	연구윤리의 교육현장 적용 수준과 범위 및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P.42
Q94	인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입 시 연구윤리 대응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P.43
Q95	인간 대상 연구 시, 병원 간호 기록지 등은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P.43
Q96	논문 표절율의 기준을 어떠한 면을 기반으로 보아야 하나요?	P.44
Q97	이의신청 단계의 회의 및 조사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P.44
Q98	연구윤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지(숙지)해야만 하나요?	P.44
Q99	에듀넷 등에 올라온 교수-학습관련 동영상(교수학습 우수사례, 교사 및 학생의 얼굴과 행동이 보임, 3년 이상 시간이 지난 자료)을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경우, IRB 심의 대상인가요?	P.45
Q100	비대면 상황에서 연구윤리 위협상황은 무엇인가요?	P.45
Q101	대상자를 동일하게 하여 두 개의 실험을 진행할 때 각각의 IRB가 필요한 것인지요?	P.46
Q102	유전자 조작 연구윤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P.46
Q103	연구과제 심사에서 이해당사자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P.47
Q104	IRB신청 시 큰 연구주제에 대한 IRB 신청 후 나머지 소주제도 다 IRB 신청을 해야 하나요?	P.47
Q105	공동저자의 저자표기 문제가 궁금합니다.	P.48
Q106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연구 수행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P.48
Q107	국내 연구윤리 문제 중 최우선 해결 사안은 어떤 것인가요?	P.48
Q108	패널조사의 경우 연구자료 보존기간이 일회성 연구와 차이가 있나요?	P.49

## II. 연구윤리 관련 기타 질의

Q109	포스트코로나에 도래한 지금, 통상적인 윤리의 기준을 넘어서야 하는 연구(임상실험 등)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문화 향유 공간과 더불어 공공장소에서의 효과(실험 또는 검증)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온다면, 윤리의 기준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P.49
Q110	도서관에서 연구 윤리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제공해야 하나요?	P.49
Q111	연구진행 시 석사의 경우 사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례를 선택해서 사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 윤리로 보면 사례를 제공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공하지 않거나 선택해서 제공하는 것은 윤리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P.50
Q112	해적저널들이 있다고 하는데 해적 저널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P.50
Q113	하나의 실험에서 두개의 논문이 나오는 것이 윤리규정에 위반되나요? 같은 실험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을 경우 다른 논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P.51
Q114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계획이 없이 조사된 자료로 사후 연구를 시행할 때의 적절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P.51
Q115	연구 윤리의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P.51
Q116	시리즈로 연구할 경우 IRB를 묶어서 심의 신청할 수 있나요?	P.52
Q117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어떤 부분이 강화되고 변화되었는지요?	P.52
Q118	타 기관에서 설문조사로 연구된 데이터를 개별 논문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P.53
Q119	메타분석 등의 2차 자료 분석에서 기관 IRB를 받아야 하나요?	P.53
Q120	중등학생과 연구자간 상호협력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P.53
Q121	중복게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P.54
Q122	이해상충(COI)이 있을 경우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요?	P.54
Q123	데이터 중복사용에 대한 부정행위는 무엇인가요?	P.55
Q124	공통적인 기관별 연구윤리 운영지침은 무엇인가요?	P.55
Q125	국내와 외국의 연구 윤리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P.55
Q126	자기 표절 정의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P.56
Q127	경영학 관련 논문 작성 시 IRB 승인 해당되는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P.56
Q128	진실위에서 제보 받은 내용에 대하여 즉시 기각이 가능한지(예비조사실시 없이) 궁금합니다.	P.57
Q129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질적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온라인 인터뷰 시 윤리적으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P.57
Q130	상담 연구를 할 때 연구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유의해야 할 윤리적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P.57
Q131	다양하게 논문 표절에 대한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표절이란 부분에서 몇 %까지 표절인가요?	P.58
Q132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인용할 때는 어떻게 출처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P.58
Q133	이미 연구하여 발표한 자료로 분석하는 논문에 IRB 승인이 필요한가요?	P.59
Q134	메타분석 연구도 IRB가 필요한가요? 이미 연구하여 발표한 자료로 분석하는 논문에 IRB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P.59
Q135	논문의 저자 인정 여부 및 저자의 순서를 결정할 때 원칙은 무엇인가요?	P.59

□ 주제발표 1 관련 답변

최근 연구윤리 이슈와 한국연구재단의 대응 -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장

<p>Q1-1</p> <p>Q1-2</p>	<p>연구윤리지원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지원하나요?</p> <p>연구윤리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p>
<p>A1</p>	<p>연구윤리지원센터는 한국연구재단 지원 과제에 대한 연구부정사건 조사·처분과 더불어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 정책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p> <p>구체적으로 연구윤리 체보 접수 및 상담 지원, 연구부정 의혹사건 재조사, 부실학술활동·부당저자 표시 등 연구윤리 이슈 대응,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구윤리 교육 지원, 연구윤리 정보 제공 및 인식확산 지원, 연구윤리 전문가 파견 및 컨설팅 지원, 연구윤리 포럼 개최 지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등이 있습니다.</p>
<p>Q2</p>	<p>윤리적 혹은 도덕적 개념이 없으면 그러한 사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연구윤리의 정책과 결과 평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행되는 윤리학 혹은 도덕철학의 의무적 이수라 생각합니다. 동·서양 윤리학이나 관련된 이슈나 쟁점들을 익힘으로써 연구자들이 선제적으로 윤리의식을 갖고 신중하게 연구를 수행할 듯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의무적 윤리교육 이수에 관해 시행하고 있거나 향후 계획된 정책이 있는지요?</p>
<p>A2</p>	<p>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 종합계획, 기초연구사업시행계획 등에 의거하여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수 이수 교육과정은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이공계, 인문사회계),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이공계, 인문사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문 뿐 아니라 영문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p>
<p>Q3-1</p>	<p>연구재단 지원과제의 결과물이 아닌 연구물의 연구부정행위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지원센터를 통해 조사가 가능한가요?</p>
<p>Q3-2</p>	<p>연구윤리지원센터가 한국연구재단 내에 설치되다보니,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연구부정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조사 지원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재단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주실 수 있나요?</p>



A3	<p>연구부정행위의 일차적 검증 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입니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 제1항).</p> <p>재단 지원과제의 경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7조에 따라,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소속기관의 요청에 의해 센터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재단 지원과제가 아닌 경우 센터에서 조사가 불가능합니다.</p>
Q4	<p><b>‘연구가 범죄다’라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자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규정 및 연구윤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계획도 있으신가요?</b></p>
A4	<p>2019년 기준 전체 대학의 98.9%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대응체계는 상당부분 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이 합리적인 규정 및 연구윤리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 연구윤리 운영수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개별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 제도운영, 교육 등 운영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 연구윤리활동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연구윤리 관리체계 전반의 확립 및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p>
Q5	<p><b>한국연구재단 지원연구사업 연구윤리와 학교 내의 연구윤리위원의 역할, 관계에 대해 질문합니다.</b></p>
A5	<p>대학 연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검증 주체는 일차적으로 소속기관 연구윤리위원회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한 과제에 한해, 대학의 (본조사)검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사안에 따라 재단이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토 여부 및 재조사에 대한 최종 확정결과는 재단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입니다.</p>
Q6	<p><b>연구윤리지원센터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또는 추구해야 할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b></p>
A6	<p>연구윤리지원센터는 우리나라 대학과 과기부 출연(연)을 포함한 연구계 전반의 연구윤리 확립 및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추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윤리 운영수준 향상을 위해서 학문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 풀을 구축, 필요시 전문가 파견 및 추천을 지원하여 연구윤리 검증능력을 향상시키고 연구윤리 실태조사 및 운영컨설팅을 통해 전반적인 기관 연구윤리 관리체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정부 소관부처 정책지원을 통해 국가R&amp;D</p>



	<p>및 대학, 출연(연)의 연구윤리 제도 확립에 기여하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및 대학교육협의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윤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강사를 육성하여 연구윤리 교육의 저변과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대학연구윤리협의회와 학술단체연합회 등과는 연구윤리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최신 연구윤리동향 수집 및 다양한 현안이슈 대응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도모합니다.</p>
Q7	<p><b>선진국 수준을 위한 현 시점에서의 연구윤리를 위한 재단의 노력은 무엇인가요?</b></p>
A7	<p>대학 및 출연(연)을 포함한 우리나라 연구계의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p> <p>재단은 2018년 6월,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재단소관 사업의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2월에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윤리 정책자문과 더불어 연구부정 사건처리 및 심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연구윤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연구부정사건의 조사·처분은 물론, 연구윤리 정책지원·교육·홍보 업무 외에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슈에 종합대응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연구계 전반의 성숙한 연구문화와 연구윤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p>
Q8	<p><b>등재학술지 발간과정에서의 연구윤리 표준화방안은?</b></p>
A8	<p>연구결과물의 학술지 게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논문투고 및 심사, 출판 승인 등)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연구윤리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란 안내서를 2020년 5월 배포하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인문사회 분야 및 예체능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으로 2021년에 발간될 예정입니다.</p>
Q9	<p><b>연구윤리지원 센터는 어떻게 구성되나요?</b></p>
A9	<p>연구윤리지원센터는 총 27명의 인력으로 윤리정책팀과 조사법무팀, 연구정산팀으로 구성됩니다. 윤리정책팀은 연구윤리 정책지원·교육·확산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으며, 조사법무팀은 연구부정행위 조사·제재 및 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연구정산팀은 연구비 집행관리·정밀정산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p>

Q10	<b>연구윤리지원센터 3개 팀 별 전문성 확보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방향은 무엇인가요?</b>
A10	<p>연구윤리지원센터는 기존의 연구부정 사건의 조사·처분 등 사후관리 중심에서 예방교육·정책지원 등 이슈 종합대응 역할을 강화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윤리정책팀을 신설하고 연구윤리경력직 채용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p> <p>또한, 유관 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학연구윤리협의회와 신규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연구윤리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협력하며, 학술단체총연합회 등과 연구윤리 포럼 공동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구계·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p>
Q11	<b>EU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가운데, EU 사업에 선정된 연구자가 재단의 한EU 공동연구지원사업을 통해서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 EU 측에서 연구자의 기관이 윤리적으로 검증된 기관인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요구한다는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윤리센터가 국내연구자 연구과제 및 기관에 대한 윤리적 검증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는지요?</b>
A11	<p>현재로서는 센터에서 연구자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검증 실시 또는 인증을 부여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대신 대학 및 출연(연) 등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지침을 제정하고 연구윤리위원회 등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재단은 해당 기관의 연구윤리문화 정착 및 연구윤리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연구윤리전문가 구축 지원, 연구윤리 운영컨설팅, 관련 연구윤리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p>
Q12	<b>앞으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연구윤리지원센터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지?</b>
A12	<p>센터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연구현장의 최신 연구윤리 동향을 수집하고 각종 현안이슈 대응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수립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 한국연구재단 소관 연구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윤리 확립 및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대응 및 조치 여부를 결정할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최근 일부 연구자들의 부실 학술학회 참여에 대한 언론제보 및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응하여 재단은 부실학회 활동에 대한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등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연구비 적정집행관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p>

Q13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 받을 경우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처해지는 후속조치는 무엇인가요?
A13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 받은 후 관련 연구과제가 연구재단 소관사업인 경우, 연구비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주제발표 2 관련 답변

선진국 수준의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방안 - 이인재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

Q14	학부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입니다. 예비교사 대상 연구로서 학생들의 과제물들을 자료로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을 때,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A14	<p>아마 질문자가 맡고 있는 과목의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받은 과제물을 받아 분석하여 데이터를 산출하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예, 이것도 인간대상 연구이므로 반드시 연구대상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p> <p>연구 시작 전 연구의 목표와 내용, 방법 그리고 연구 참여로 인한 이익과 불편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설명문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연구 참여 여부를 묻고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서면동의를 받을 때 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분명하게 공지해야 하며, 수업과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수업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p>
Q15	연구윤리에 대한 감각 없이는 사실 형식적 위원회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이 많이 미흡한 현시점에서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연구윤리, 실천을 위해 어떤 방안이 효과적인가요?
A15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역할과 관련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대학의 연구윤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대학의 연구윤리에 대한 비전과 책무를 제시하고,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윤리에 대한 높은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내부 인사가 연구윤리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전담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여 최소한 연구 부총장 산하의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책무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연구윤리 인식 제고 및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다양한

	<p>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시, 여러 학문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연구윤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는 물론이고, 지식재산권이나 특허, 데이터 관리, 연구 보안, IRB나 IACUC 관련 사항, 연구실 안전, 이해충돌 등의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대학 내외의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p>
Q16	<p><b>대학교 차원에서 인문사회 분야에는 단독 연구를 중시하는 방향이 연구업적 규정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요?</b></p>
A16	<p>학문 및 연구 분야의 특성이 다양하고, 또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면 학제적, 지역간, 국가간 공동연구가 이뤄져야 하므로 획일적으로 단독 연구 또는 공동 연구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질의한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공동 연구에서의 업적 배분이나 저자표기와 관련하여 인문사회 분야 연구는 전통적으로 단독 연구가 주를 이뤄왔으니 이것이 어느 정도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 현대 연구에서는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협업, 융합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과거의 연구 관행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단독연구이든 공동연구이든 연구가 연구로서의 가치를 담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책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성실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구 과정이나 연구 내용에서의 진실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p>
Q17	<p><b>이인재 서울교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연구부적절행위(QRP)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가 있었습니다. QRP의 사례나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연구부적절행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b></p>
A17	<p>의심스런 연구수행(QRP) 또는 해로움을 주는 연구수행(DRP)을 연구부적절 행위라고 합니다. 이는 연구부정행위와 책임있는 연구수행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 지대(GREY AREA)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몇 가지 예를 1992년 미국 과학한림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S)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 데이터를 적절한 기간 동안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li> <li>2) 연구기록이 부실하거나 발표된 논문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li> <li>3) 논문 성과에 중요한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있음)</li> <li>4) 발표 논문의 근거가 되는 독특한 연구 자료·데이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료 연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li> </ol>

	<p>5)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적절한 통계 기법이나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p> <p>6) 연구 관련 연구원이나 보조원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및 착취하는 경우</p> <p>7) 재현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채, 종결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경우</p> <p>8)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행위</p>
<p>Q18</p>	<p><b>학술대회 초록 포스터에 발표한 내용을 같은 학회에 논문으로 투고하는 것은 표절인가요?</b></p>
<p>A18</p>	<p>이 질문은 정확히 말하면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대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표절은 타인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 출처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아 생기는 저작권 침해 또는 연구윤리 위반이고,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올바르게 재활용하여 생기는 저작권 침해 또는 연구윤리 위반이기 때문입니다.</p> <p>일단 투고하고자 하는 해당 학술지의 투고 규정이나 출판윤리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동일 학회에서 주관한 학술대회의 초록 포스터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된 논문을 투고해도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따른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p> <p>일반적으로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 내용을 후속 저작물에서 재활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출처를 밝혀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의 의혹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면, 가급적 재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출처를 밝히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중복게재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인가에 있으므로 학술대회 초록 포스터를 공식적인 출판물로 보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면 꼭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재활용해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p>
<p>Q19</p>	<p><b>학위논문에 앞서 작성한 소논문에 사용된 데이터 일부를 이후 학위논문에 사용해도 가능한가요?</b></p>
<p>A19</p>	<p>질문에서 말하는 ‘학위논문에 앞서 작성한 소논문’이 동료심사를 거쳐 정기적으로 출판되는 전문학술지와 같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저작물이라면 여기에 사용한 데이터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중복게재의 의혹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복게재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인가에 있으므로, 만일 위의 ‘소논문’이 공식적인 출판물이 아닌 것이 명확하다면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학위논문에서 재활용해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p>



Q20	<b>앞으로 학회 차원에서 나아가야 할 연구윤리의 방향은 무엇인가요?</b>
A20	<p>학회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 주제나 학문 영역의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후속 연구의 촉진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중요한 연구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연구자 못지않게 학회도 연구윤리에 높은 관심을 갖고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중요한 주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역할 내지 책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회 구성원들의 연구윤리 인식 제공 및 확산을 위한 논의의 공간 및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술대회 시 지속적으로 연구윤리 특강이나 워크숍 제공</li> <li>-정기 뉴스레터나 학술지의 EDITORIAL을 통해 연구윤리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분석 및 정보 제공</li> </ul> </li> <li>2)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 관련 지침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li> <li>-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철회 및 공지</li> <li>-연구부정행위 범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출판윤리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li> </ul> </li> <li>3) 동료심사 시스템의 확립, 동료심사에 대한 규정 등으로 투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심사의 엄정성 확보</li> </ol>
Q21	<b>학생 참여 설문에서의 연구윤리는 어떻게 되나요?</b>
A21	<p>학생 참여 설문을 활용한 연구는 인간대상 연구이므로 연구 시작 전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 심의를 받아 승인받은 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p> <p>학생 대상으로 설문을 받기 전에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진이 설문 내용이나 참여 방법 등이 포함된 설명문을 제시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참여 여부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학생이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한 경우, IRB가 제공한 동의서 양식에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하여 서면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설문에 참여하는 학생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취약한 연구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이들의 인권이나 안전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을 잘 세워 실천해야 합니다.</p> <p>설문 참여를 위해 설명을 할 때, 설문 도중 언제든지 설문 참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어떤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설문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익명화되고 IRB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합니다.</p>



Q22	<b>박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자기 표절에 빠지지 않기 위한 대응책이 있나요?</b>
A22	<p>박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왜 게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하고 박사학위 논문의 심화 및 발전된 형태가 학술지 논문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비록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뭔가 학술적으로 가치를 갖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한 연구물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표된 바 있는 연구 결과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그 행위로써 연구 공동체에 어떤 학문적 가치 기여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연구 결과물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거나, 그 간의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업데이트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새로운 학문적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p>또한 이미 발표된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있는 내용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학문 분야마다 관점이 다르지만, 인터넷이 발달하여 누구라도 쉽게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접근과 인지가 가능하므로 출판된 것으로 보고, 이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재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때에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출처표시 없이 재활용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본인의 연구 업적을 중복으로 인정받거나, 연구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처표시 없이 재출판된 연구 결과물들을 새로운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문제가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p>
Q23	<b>석·박사 학위 논문을 저널 출판에 활용 시 어느 정도 수정이 되어야 연구윤리에 위배가 되지 않나요?</b>
A23	<p>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의 저작물에서 재활용할 때 몇 % 이내로 해야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여 후속 저작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이때 재활용되는 선행 저작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출처를 밝혔더라도 후속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선행 저작물의 분량이 후속 저작물의 창작성을 해칠 정도로 과도하게 하는 것도 중복게재의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투고 규정이나 출판윤리 규정에 석/박사 학위 논문의 재활용 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논문을 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가급적 석/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 및 발췌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 및 발전 시킨 내용이 많도록 논문을 기획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Q24	<b>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는 경우도 자기표절에 해당하나요?</b>
A24	<p>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을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선행 저작물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만일 학위 논문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저작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학술지 논문에서 다시 출처표시 없이 재활용해도 문제가 아닙니다만, 공식적인 출판물이라고 간주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였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학위 논문을 심화, 발전시켜 학술지 논문으로 작성하되, 재활용되는 데이터나 중요한 문장 등에 대해서는 출처를 정확히 밝힌다면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p>
Q25	<b>학술지 발간 시 연구윤리 확보 또는 증명 방법이 있나요?</b>
A25	<p>투고 논문에 대하여 동료심사를 거치되, 동료심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고 규정이나 출판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연구윤리 위반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떨 때 연구윤리 위반이 되고, 연구윤리 위반을 하였을 경우, 어떤 조치나 제재를 받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p> <p>만일 투고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연구진실성 검증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검증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었을 때 그에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논문 철회 등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나 학술지에 공지를 하여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해당 연구물을 인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p>
Q26	<b>선진국 수준의 대학 연구윤리에 대한 특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b>
A26	<p>미국과 유럽의 대학에서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구 부총장은 연구진실성 및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업무담당 부서는 물론이고 IRB/IACUC, 데이터관리 및 보안, 연구실 안전과 이해충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는 대학의 연구윤리에 대한 비전과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고, 연구부정행위 제보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p> <p>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대학이 소속 연구자를 보증한다는 ASSURANCE PROGRAM에 따라 대학이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인식 제고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연구비 지원 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대학이 추진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반 노력에 대해 연차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방 정부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반드시 연구윤리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오프라인으로 8시간 정도 받아야 합니다.</p>

Q27	<p><b>각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및 의결 사항의 이행 방안이 있나요?</b></p>
A27	<p>각 대학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최고의 기구로 연구윤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먼저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야 하고, 독립적인 기구로서 특히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p> <p>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윤리 인식 제고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윤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 지원되어야 합니다.</p>
Q28	<p><b>수업 중 진행한 학생 성찰 일지 및 소감문 등(익명 작성)의 연구 활용 가능한가요? 또한 동의서 취득이 필요한가요?</b></p>
A28	<p>예, 질의 내용은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학생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받았다면 연구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대상 연구자는 인간대상 연구를 할 때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동의를 받을 때 해당 연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포함되어야 할 것은 연구의 목적,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 동의의 철회에 대한 사항 등입니다</p> <p>생명윤리법에서는 인간대상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동의 취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생명윤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면제하지 않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lt;생명윤리법 제16조&gt;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면제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li> </ol>

Q29	<b>해외 대학의 연구윤리 교육 현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대학에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b>
A29	<p>대학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통상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전문가가 부족하여 외부의 전문가에 의존하다 보니 원하는 때에 원하는 주제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p> <p>대학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간 연구윤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이때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등 교육 대상자의 특성이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윤리 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교육 대상별 맞춤형 다양한 연구윤리 교육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대학 홈페이지에 연구윤리 관련 독립된 사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p>
Q30	<b>최근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연구 진행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b>
A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자체 또는 정부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때 신속하게 안내</li> <li>-연구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내외 연구윤리의 동향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뉴스레터 형식으로 제공</li> <li>-연구비 지원 기관별 연구윤리 준수 사항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안내</li> <li>-연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또는 궁금해 하는 연구윤리 관련 Q/A 제공</li> <li>-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시 이를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나 절차 마련</li> </ul>
Q31	<b>대학 현장에서 연구윤리 인식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b>
A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구성원들이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강화</li> <li>-대학 자체로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또는 분기별 연구윤리 실시</li> <li>-대학생 및 대학원 생 대상 수업 시간에 연구윤리의 내용이 강조될 수 있도록 강의 계획서에 반영</li> <li>-석/박사 학위 논문 심사 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작성 및 최종 논문 제출 시 문장 유사율 점검 결과표 제출</li> <li>-교수 및 연구실 내 선임연구자가 솔선수범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윤리 규정 준수</li> <li>-교수 대상 연구윤리 교육의 의무화(연 1회 이상 자체 교육프로그램이든 외부 교육프로그램이든 수강)</li> </ul>

Q32	<b>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 작성과 연구윤리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및 지도방법이 있나요?</b>
A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대학원 전공에 가칭 ‘연구방법론과 연구윤리’와 같은 과목을 개설하여 여기서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면서 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li>-논문 지도교수가 출선수범하여 연구윤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수 대상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li> <li>-학위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표절, 중복게재, 데이터 조작, 저작권 침해 등 연구윤리 위반이 없는지 세밀하게 확인하여야 함. 구두 발표 및 최종 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 분야에 대한 점검을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li> <li>-최종 심사 시 문장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유사율이 높은 경우, 정밀하게 확인하여 출처 누락이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함</li> </ul>
Q33	<b>연구윤리가 학문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 것인가요?</b>
A33	<p>학문 분야마다 제 각각 다른 연구윤리의 원칙이나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문 분야의 특성이나 차이에 상관없이 연구자라면 누구나 알고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 규칙을 연구윤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윤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추구 가치는 존중, 진실성, 객관성, 투명성, 개방성, 책임 등입니다. 그리고 연구윤리의 주요 내용으로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 연구부정행위, 인간대상 연구와 IRB, 실험동물연구와 IACUC, 이해충돌, 데이터 관리,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출판윤리가 있습니다.</p> <p>이러한 연구윤리의 주요 내용 중에서 학문 분야의 특성이나 연구 방법에 따라 더 강조되기도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관련이 없기도 할 수 있지만, 학문 분야별로 연구윤리의 원리나 주요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p>
Q34	<b>대학교수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 및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b>
A34	<p>우리나라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연구윤리에 대한 무관심 또는 연구자로서 자신은 연구윤리의 위반과 무관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규범을 등한시 한다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따라서 대학의 교수나 연구원 또는 대학원생들의 연구윤리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대학의 교수 중에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관심이 많아 스스로 관련 내용이나 이슈에 대해 탐구하면서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윤리를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교수들 중에는 연구윤리에 대한 무관심, 무지, 실수, 고의성 등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p>



	<p>연구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사후 처리나 제재보다는 예방입니다. 그러므로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예방 주사를 제공하는 접근, 즉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만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적어도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윤리를 위반한 교수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p>
<p>Q35</p> <p>A35</p>	<p><b>대학 자체 연구윤리 규정 제/개정 시 필수 반영사항 및 고려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윤리 규정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명료히 해야 합니다.</li> <li>-교육부 등 국가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자체 연구비나 학위논문 등 학술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li> <li>-대학 자체의 연구윤리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적어도 교육부 등 국가 수준의 연구윤리 규정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상충되거나 협소한 것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li> <li>-연구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대학 자체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구부정행위 범위 이외에 자체 조사 및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li> <li>-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호가 필요하지만,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제보 행위, 피조사자의 고의적인 조사 방해나 지연,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증거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li> <li>-연구부정행위 검증 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내려졌을 때 이에 대한 제재 조치 유형이나 양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li> <li>-검증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때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li> </ul>
<p>Q36</p> <p>A36</p>	<p><b>학위 논문 중 일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표절인가요?</b></p> <p>질문은 타인 저작물에 대한 표절이 아니라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올바르게 않은 재활용에서 생기는 자기표절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타인의 학위 논문에 있는 독창적이거나 중요한 내용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학술지 논문에 인용하는 것은 표절입니다.</p> <p>자신의 학위 논문 일부를 학술 논문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위 논문을 공식적으로 출판된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면,</p>



	<p>이를 학술지 논문에서 다시 활용하는 것은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학위 논문을 누구나가 쉽게 접근하고 인지할 수 있으므로 학위논문을 무조건 출판되지 않는 저작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학위 논문에 있는 중요한 일부분을 자신이 쓴 학술지 논문에서 재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Q37	<p><b>학회마다 학교마다 재단마다 연구윤리 규정이 모두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학교나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 중 가장 상위 규정이 무엇인가요?</b></p>
A37	<p>연구윤리 관련 규정은 각 기관별로 자체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p>질문에서 상위 규정이란 해당 연구의 연구비 지원 주체와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교육부나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물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처리 지침은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의 연구윤리 규정이 일차적입니다.</p> <p>만일 정부나 외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연구자 자율적인 연구나 학위 논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어떤 특정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할 때는 일차적으로 해당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상급 기관이나 다른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을 참조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p>
Q38	<p><b>각 기관과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만 운영되는 기구인가요?</b></p>
A38	<p>일반적으로 현재 각 대학이나 정부출연(연) 등 전문 연구기관에 설치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상설 기구입니다. 즉, 관련 규정에 따라 상설로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검증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p> <p>그러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설로 설치되어 운영되지 않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 구성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어떤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을 때, 이를 검증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사후 처리를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p>

□ 주제발표3

출연연의 연구현장 인식에 기반한 연구윤리 선진화 방안 - 남승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회장

Q39	<p>연구자 소속기관 내에 연구윤리 모니터링 및 심의 등을 자체적으로 하여 국내 대부분의 연구관련 기관들이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 의식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
A39	<p>현재까지 기관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규정이나 제도 등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 기관별로 연구윤리 담당자가 있지만 현장 연구자들도 관심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향후 규정과 제도가 갖춰지고 체계가 구축되면 실질적인 관리가 더욱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나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 문제 해결이나 제도 확립은 한계가 있으며 연구자들의 내부 문화를 통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p>
Q40-1	<p>국가기관에서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구한 자료를 연구자 이외 다른 사람이 요청 시 볼 수 있나요?</p>
Q40-2	<p>국가기관 내에서 사용된 정보 활용 관련 본인 이외 지도자가 원본 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나요?</p>
A40	<p>국가기관별 규정이 다르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해당 기관 연구 행정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p> <p>연구데이터는 연구자 자신들의 소유권이 아닌 지원금을 받은 연구 기관만이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원본데이터나 중요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항상 보호되어야 하며 연구의 화폐로서 연구에 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종데이터를 비롯하여 연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른 연구자들이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들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정보공개법의 요청에 따라 연구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특별한 자료의 경우 승인을 받은 사람들만이 특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관과의 기밀 유지 합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Q41	<p>지자체에서 공동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개인 연구자가 그 결과물, 아이디어를 학술논문으로 게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면 문제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요?</p>
A41	<p>다음과 같은 상황은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 논문이란 처음의 연구 발표를 언급하지 않을 채 같은 정보를 또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p>

	<p>논문을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투고 규정이나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전 연구내용을 활용하여도 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공식적인 출판물로 저작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급이 없다면 반드시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p>
<b>Q42</b>	<b>다른 기관에서 연구데이터 수집 시 유의사항으로 어떤 부분이 있나요?</b>
A42	<p>다른 기관 데이터 수집 시 데이터 수집 절차와 수집된 정보의 전반적인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이나 동물이 연구대상인 데이터</li> <li>-위험한 물질이나 생체를 사용하는 데이터</li> <li>-도서관이나 데이터베이스, 공문서 자료실에서 습득한 정보를 사용한 데이터</li> <li>-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는 데이터</li> <li>-공개적으로 발표된 사진과 정보를 사용하는 데이터</li> <li>-저작권 혹은 특허권이 있는 절차나 물질을 사용하는 데이터</li> </ul> <p>연구자들은 연구하는 데 있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기관에 공식적으로 요청 후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면 됩니다.</p>
<b>Q43</b>	<b>혁신법 제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제도의 방향은 무엇인가요?</b>
A43	<p>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복잡한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하여, 연구자가 행정 부담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연구자,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노력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와 처벌로써 부정행위를 금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법 제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p> <p>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p> <p>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li> <li>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li> <li>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li> <li>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li> </ol>

	<p>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p> <p>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p> <p>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li> <li>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i> </ol> <p>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⑤ 부정행위의 세부기준,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조치·보고의 내용·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a href="http://www.rndlaw.kr/index.do">http://www.rndlaw.kr/index.do</a></p>
--	--

**Q44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과제는 시작할 때 IRB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하나요?**

A44	<p>모든 과제가 IRB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되는 연구만 IR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 대상이 되는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그리고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마지막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는 반드시 IRB승인을 받아야 합니다.</p> <p>질의한 것처럼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과제가 IRB 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인간 대상 연구가 아닐지라도 연구자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p>
-----	---

**Q45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원방안이 있나요?**

A45	<p>현재로서는 출연(연)의 각 기관별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예산은 많지 않으나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은 논문 위변조 식별하는 프로그램 구매 등에 사용되거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출범에 따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구윤리 가이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연구윤리 정보제공, 기관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윤리 운영수준 컨설팅 등이 지원될 것입니다.</p>
-----	--

Q46	<p><b>규제 중심의 연구 윤리에서 벗어나 현장 연구자 중심의 연구 윤리 활성화를 위한 출연연의 구체적 방안의 예시가 있나요?</b></p>
A46	<p>현장의 연구자들과 경영진 등 관련자들에게 연구윤리에 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실제 제도나 규정 등의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의 연구자들 스스로 자각을 통한 현장의 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기관의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연(연) 특성에 맞는 연구윤리 정립 및 인식개선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윤리 정립, 인식 개선 방안</li> </ul> </li> <li>2) 자발적인 현장중심의 연구문화 개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연) 스스로 ‘고착화된 불합리한 연구문화’ 극복</li> <li>- 자발적 실천방안 마련</li> </ul> </li> <li>3) 선제적 연구윤리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처벌원칙’에서 ‘사전예방원칙’으로 방향 전환</li> <li>- 새로운 연구환경에 적합한 연구윤리제도 선제적 대응</li> <li>- 연구윤리 선진화 거버넌스 제언</li> </ul> </li> </ol>
Q47	<p><b>연구윤리 선진화를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b></p>
A47	<p>연구윤리 선진화를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연구문화의 개선 그리고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는 연구윤리가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연구의 구현’이라는 기본 정신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연구윤리의 개념을 엄격히 적용하며, 자기 스스로의 도덕률을 정립하고 수시로 점검</li> <li>- 연구윤리강령이 제정되면 스스로의 실천의지를 독려 (매일 연구 전에 연구 윤리강령을 마음 속에 새기는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li> <li>- 출연(연) 연구현장의 각 분야별 연구자(연령, 직급 다양화)들의 자발적 인식 개선 커뮤니티 구성 및 활성화</li> <li>- 자신의 연구 활동 중 습득한 선진국 연구윤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안</li> <li>- 연구자 스스로 질적 연구를 중시하는 연구 풍토 조성에 앞장서도록 노력하며 타 연구자의 업적 인정에 인색하지 않은 건전 연구문화 실천</li> <li>- 각자의 연구 수행 종료 시점에서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제도에 대한 검토 및 제안하는 과정을 스스로 시행하도록 노력</li> </ul>



<p>Q48</p>	<p>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좋은 정책과 바람직한 방향은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장 연구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일부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특히 규제보다는 사전예방 및 교육, 현장 연구자 중심의 가이드 제시, 연구 구성원들 간의 소통(예, 학생연구원과 선임연구원) 등의 이슈가 (연구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이나 추후 연구/실행 방향 등이 계획되어 있나요?</p>
<p>A48</p>	<p>본 정책연구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상위 기관에서 지원을 계속하여 주기를 희망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의 연구자들이 원하는 방법이나 제언, 그리고 이를 교육하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 등은 현장 연구자들과 연계된 연총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모니터링 하고자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계획되진 않았지만 연구윤리에 대한 연구현장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적용 가능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연)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연구윤리강령(안) 제시</li> <li>- 현장 연구자 중심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연구윤리 기준과 범위 명확화하여 규정과 처벌보다 최소한의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마련</li> <li>- 출연(연) 연구 현장은 자율성 강화와 시스템 보완을 통하여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윤리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서 일벌백계하여 책임성 강화</li> </ul>
<p>Q49</p>	<p>국가에서 시행하는 IRB는 무엇이 있나요?</p>
<p>A49</p>	<p>국가에서 시행하는 IRB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KGCP」 이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인간대상 연구로 확대 적용</li> <li>- 대상기관 : 모든 (교육/연구)기관</li> <li>-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li> </ul> </li> <li>* 약사법/의료기기법/KG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의료기기, 생물학적 제재 등 허가 대상품목</li> <li>- 대상기관 : 의료기관 (임상시험실시 지정기관)</li> <li>- 주무부처 : 식약처</li> </ul> </li> </ul>



□ 연구윤리 관련 질의 - 전문가(서울교대 이인재 교수) 답변

Q50	<p><b>코로나19로 설문조사 등이 힘들어졌습니다. 혹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연구를 했을 때, 서면 설문지 활용했을 때와 달리 연구윤리에 지적받을 만한 문제가 발생하나요?</b></p>
A50	<p>설문조사든, 인터뷰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할 때 연구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연구에 대해 인간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informed consent), 인간 대상자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 안전 확보, 위험과 불편의 최소화라고 봅니다.</p> <p>최근 설문조사를 할 때는 서면보다는 구글 등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인간 대상 연구를 할 때 연구대상자에게 반드시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 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동의를 면제받을 수 있더라도 온라인 상에 설문 목적과 내용, 참여 방법, 참여에 따른 위험과 불편,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나 보호 방안, 설문 도중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면 이때 어떤 불이익도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설명문을 제시한 후, 이를 읽고 동의할 때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문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p>결론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할 때에도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실대로 알리고, 이를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고, 설문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험 및 불편의 최소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p>
Q51	<p><b>인터넷 상의 자료를 인용할 때는 참고문헌에 어떤 방식으로 표기 하나요?</b></p>
A51	<p>최근 연구를 할 때, 인터넷 상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 상의 자료 중에는 신뢰할 수 없는 것도 많으니 먼저 인용하고자 하는 자료들이 객관적이고 믿을만한 것인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인용의 가치가 충분할 때에만 인용해야 합니다.</p> <p>-각주나 내용주 표기와 참고문헌 작성은 APA 방식, CHICAGO 방식 등 학문 분야별로 다양하나 논문이나 보고서 전체에서 하나의 방식으로 일관되게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1) 논문이나 저서: 저자명(발행연도), Title, URI 주소, 접속 연월일          Author, A. (date). Title of document [Format description]. Retrieved from https://URL, 접속 연월일</p>

2) 뉴스 기사나 방송 및 BLOG 자료, 그림과 표, 강의 자료 등 웹 페이지에서 인용한 자료는 그 형태를 확인 후 해당 자료에 맞게 출처표기  
 Freakonomics. (2010, October 29). E-ZPass is a life-saver (literally) [Blog post]. Retrieved from <http://freakonomics.blogs.nytimes.com/2010/10/29/e-zpass-is-a-life-saver-literally/> 접속 연월일

Q52

**논문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이 윤리 면에 저촉되나요?**

학술지 게재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특히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자신 또는 타인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독특한 어구나 문장, 그림, 표, 그래프, 데이터 등)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둘째, 직접인용을 할 때에는 인용부호나 인용단락 표시를 하고,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요약 및 말바꿔쓰기(paraphrasing)를 한 간접인용도 출처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표현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원저작자가 쓴 표현이나 글의 순서를 그대로 가져오기 보다는 연구자의 개성이 담긴 글쓰기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 쓰는 것이 좋습니다.

A52

넷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하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입각하여야 하며, 자신의 연구 성과를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게 보이기 위해 왜곡, 과장, 축소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중요한 부분을 재활용할 때에도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 마치 처음 사용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에는 자신의 것이 주가 되고 타인의 것이 부수적이 되도록 공정한 이용(fair use)의 범위 내에서 해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독창적인 사진이나 그림 등을 가져다 활용할 때에는 가급적 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침해의 의혹을 받지 않으며, 원저작자나 출판사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Q53	<p><b>조사연구에서 온라인 자료 수집 시, [연구대상자의 전자동의] 절차를 간단히 받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b></p>
A53	<p>전자동의란 온라인 상에서 연구대상자가 설명문 등을 통해 해당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점을 직접 서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p> <p>온라인 상에서 전자서명을 받는 것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야 용이하며,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온라인 패널조사를 할 때 해당 전문 업체에서 전자서명을 받는 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개인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할 때, 만일 전자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면, 서면동의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IRB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되, 온라인 설문을 시작하는 첫 페이지에서 해당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상세히 한 후,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할 때 동의란에 클릭을 하게 한 후,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설문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첫 페이지에서 설문 참여를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체크하면 바로 웹 설문 사이트에서 나가게 되므로 설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p>
Q54	<p><b>실험 대상이 그린 그림 또는 사진, 실험 대상이 실험에 참여하여 작업 중인 사진을 찍어 연구에 활용할 경우의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나요?</b></p>
A54	<p>해당 연구가 생명윤리법에서 정하는 인간대상 연구에 속하는지 즉,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검토하는 해당 IRB에서 판단 및 승인하는 것이기에 소속 IRB에서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a href="http://www.irb.or.kr/MAIN.aspx">http://www.irb.or.kr/MAIN.aspx</a>)에서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IRB 심의와 별개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이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구는 생명윤리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되므로 연구 대상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승낙서를 취득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별도의 승낙서 양식은 없으며,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쉽고도 정확한 표현 방법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그 적절성은 IRB가 판단할 것입니다. 생명윤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면동의를 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면제하지 않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제16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면제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li> </ol>
<p>Q55</p>	<p><b>연구부정 제재를 강화하다 보니 자율성 존중에 대한 부분이 억압 되기에 학문의 다양성과 자율성 존중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이 있나요?</b></p>
<p>A55</p>	<p>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서 위축되고, 연구자의 자율성 존중이 다소 억압된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재가 처음부터 강하게 도입되었기 보다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아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고 봅니다.</p> <p>연구윤리는 한마디로 연구자 및 연구 공동체의 자율 규범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자율 규범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고 연구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실추될 때 외적 규제가 강제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p> <p>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자율성 존중이란 연구자로서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와 연구윤리를 스스로 지킬 때 자유로운 연구 활동이 보장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자에게만 연구윤리 준수의 책무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자가 각자의 연구 영역에서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하도록 대학이나 정부 등은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지나친 양적 위주의 업적 평가 시스템의 개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연구윤리 인식 제고 및 확산을 위한 교육 자료나 정보의 제공,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의 제공,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 정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p>
<p>Q56</p>	<p><b>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실험 노트를 적는 것보다 온라인상의 편리한 노트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b></p>
<p>A56</p>	<p>연구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잘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면연구노트 작성을 강조했습니다만,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현대의 연구 환경에서는 온라인 상에 관련 데이터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 연구 과정이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에도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많습니다. 특히 전자 연구노트의</p>

	<p>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전자 연구노트의 요건*은 1) 기록자 · 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다만, 필요시 연구기관의 장은 점검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음)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 3)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으로서 이 요건을 갖추어야만 연구노트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조작이나 분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타인으로부터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서면 연구노트에서는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두 줄로 삭선을 긋고 그 옆에 수정한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삭제한 후 저장을 하면 다시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기록된 데이터가 연구자 자신도 모르게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해당 자료나 정보를 해킹 내지 망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출처 : <a href="https://www.e-note.or.kr">https://www.e-note.or.kr</a>)</p>
<p>Q57</p>	<p><b>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주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최소기준 등)이 따로 있나요?</b></p>
<p>A57</p>	<p>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능이나 인원 수 등은 명시되어 있지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p> <p>그렇지만 대학 자율로 위원의 자격 기준과 의무 사항 등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연구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5인 이상으로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위원은 해당 직에 임명된 후 3개월 이내에 자체 또는 외부에서 제공한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임기 동안 그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와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Q58</p>	<p><b>어떤 등재지, 대학에서는 IRB 심의를 하지 않는 곳도 있던데 IRB의 공공성에 대해 궁금합니다.</b></p>
<p>A58</p>	<p>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 및 병원 등에서는 IRB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대상 연구나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에 제출하여 연구의 과학성 및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연구 도중에 연구 대상자의 추가 모집이나 연구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해서도 보고를 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p> <p>IRB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대상자 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p>



Q59	<b>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자의 윤리 범위는 무엇인가요?</b>
A59	<p>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먼저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됩니다. 또한 유아는 미성년자이면서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두 가지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p> <p>첫째, 인간대상 연구이므로 연구대상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동의를 받을 때 해당 연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포함되어야 할 것은 연구의 목적,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 동의의 철회에 대한 사항 등입니다</p> <p>둘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인간대상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동의 취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생명윤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면제하지 않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생명윤리법 제16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면제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li> </ol>
Q60	<b>온라인 강의 시 교재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b>
A60	<p>코로나 19 등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온라인 강의)이 활성화 되면서 이때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종종 발생하여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업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사용할 경우, 사용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강의 자료에 활용된 동영상이나 그림, 사진, 이미지 등은 출처를 밝히더라도 초상권이 우려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은 원저자에게 개별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할 때 무단 복제나 배포, 전송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저작권법에 의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p>온라인 수업에서 사용되는 강의 자료는 수업에 참여하는 선생님과 학생에게만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의 자료실에 올라온 동영상은 수강할 때, 사전 합의 없이 복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제3자에게 전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때도 별도의 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p>
<p>Q61</p> <p>A61</p>	<p><b>교재의 온라인 강의 사용에는 윤리적 문제가 없나요?</b></p> <p>코로나 19 등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온라인 강의)이 활성화 되면서 이때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종종 발생하여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p> <p>먼저 수업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사용할 경우, 사용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텍스트의 경우 가급적 10% 이내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p> <p>특히 강의 자료에 활용된 동영상이나 그림, 사진, 이미지 등은 출처를 밝히더라도 초상권이 우려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은 원저자에게 개별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p> <p>온라인 강의를 할 때 무단 복제나 배포, 전송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저작권법에 의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p>Q62</p> <p>A62</p>	<p><b>성인 대상 학습자 연구 시의 연구윤리가 따로 있나요?</b></p> <p>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의 연구윤리가 특별히 별개로 있지 않고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하므로 인간대상 연구를 할 때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알고 준수하면 됩니다.</p> <p>먼저 인간대상 연구이므로 연구대상자로부터 자발적으로 서명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서명동의를 받을 때 해당 연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포함되어야 할 것은 연구의 목적,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 동의의 철회에 대한 사항 등입니다.</p> <p>성인을 대상으로 서면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든, 심층인터뷰를 하든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묻고자하는 내용이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으며 이때 어떤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여야 합니다.</p>

Q63	<b>연구윤리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b>
A63	<p>현재 교육부나 대학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연구윤리의 시효, 더 정확히 말하면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시효는 없습니다.</p> <p>어떤 대학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검증 시효를 두지 않고 있지만, 이들 사업 이외에서는 연구윤리 검증 요청이나 제보가 있는 날로부터 만 5년 또는 10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검증 시효를 두지 않지만, 석사학위 논문은 2007년 이후에만 검증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대학도 있습니다.</p> <p>따라서 교육부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연구 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없지만, 대학 자체로 검증 시효를 두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과거의 연구부정행위라도 그 결과가 포함된 연구 내용을 재활용(논문 게재, 학술회의 발표 등)했다면 가장 최근의 재활용 당시의 연구윤리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Q64	<b>자기표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b>
A64	<p>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후속 저작물에서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p> <p>대표적 유형은 첫째, 데이터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논문에서 5개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다른 논문에서 그 중 3개를 또 다시 결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다시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와 고찰 부분에서 많은 중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결론도 비슷하기 때문에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도 비슷할 수밖에 없게 되어, 뒤에 나온 논문에는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게 됩니다. 이는 데이터와 텍스트의 중첩으로 인해 저작권 위반의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과거에 발표한 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몇 개의 문장 정도)을 강조하는 의미로 재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명확히 해준다면 크게 비난받지 않을 것입니다.</p> <p>둘째, 논문 쪼개기(Salami publication)가 있는데 이는 원래 하나의 연구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나 이를 몇 개의 논문에 나누어 발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논문 쪼개기는 대부분의 경우 애초에 하나의 연구로 출발하였으나 데이터가 다 모이고 논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논문으로 쪼개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논문은 완성도가 낮으며, 각각의 논문을 합쳤을 때에야 완성도 높은 하나의 주장이나 가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p>

	<p>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를 판정하는 기준은 학문 분야나 학회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이전 저작물(연구개발 보고서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이라면 해당될 수 있음)을 후속 연구물에 재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새로운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전의 발표문을 “그대로 copy &amp; paste”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학술적 글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전 발표문을 발전”시켜서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이전 발표문과는 다른 새로운 학술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p>*일반적인 중복게재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유사한 가설 - 연구 집단 관련 독립, 종속 변수가 거의 동일</li> <li>② 유사한 표본의 수 - 연구재료, 실험동물이나 인간 대상자의 90% 동일</li> <li>③ 유사하거나 동일한 방법 - 자료수집, 분석, 제시 방법이 같거나 유사</li> <li>④ 유사한 결과 - 양이나 질 적인 면에서 거의 동일</li> <li>⑤ 최소한 1명의 동일한 저자</li> <li>⑥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li> </ol>
<p><b>Q65</b></p> <p>A65</p>	<p><b>연구진실성 검증 본조사 시 전문가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나요?</b></p> <p>연구부정행위 검증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본조사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대학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30% 이상 위촉한다. 해당 조사 사안 및 제보자, 피조사자 등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본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통상적으로 본조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에는 해당 사안의 연구 및 학문 분야의 내용 전문가, 연구윤리 전문가, 저작권 전문가, IRB 및 IACUC 전문가 등이 포함됩니다.</p>
<p><b>Q66</b></p> <p>A66</p>	<p><b>질적 연구 시 IRB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가 있나요?</b></p> <p>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법 제2조제1호) 즉, “연구”를 위해서 연구 대상자에게 1) 어떤 중재(intervention)를 주고 그 효과를 보는 연구를 한다거나, 2) 대면 설문조사, 관찰연구, 면담 등을 통해 해당 대상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서 연구를 한다거나, 3)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를 한다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p>

어떤 연구 방식을 취하든 위와 같은 연구를 수행한다면 인간대상 연구에 속하므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15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를 하기 전에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연구대상자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 국가위원회가 심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연구는 심의면제가 가능합니다. 연구대상자로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를 포함하는 연구,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면담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민감한 사항을 물어보거나 과거의 기억회상으로 인한 불편함 혹은 사회적 낙인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연구라면 심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를 심의하는 IRB에서 해당 연구의 연구대상자, 연구방법, 연구가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획서의 승인 여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Q67

**실험연구에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어느 선까지 윤리적으로 수용이 되나요?**

생명윤리법 제2조제18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제17호에 근거하여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인간대상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 1차 수집의 주체가 다른 연구를 하려는 경우, 새로 수행하려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2) 1차 수집의 주체가 아닌 연구자가 하려는 경우, 1차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1차 수집 주체인 연구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위원회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과 “제공방법 등 대상자 보호 방법”을 제출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 제3자(다른 연구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 2차 연구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1차 연구자가 속한 기관위원회에서 발행한 “제공에 관한 승인서”를 받아 연구계획서와 함께 심의를 신청하면, 2차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는 그 승인서를 근거로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법 제18조제2항)

A67



Q68	<b>해외 전문기관 연구윤리 전담 조직의 현황 및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b>
A68	<p>미국의 ORI를 대표적인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미국 PHS가 지원하는 모든 연구 과제에서의 연구진실성 함양을 위해 설립된 ORI는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한 연구부정행위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DIO와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DEI를 하위 부서로 두고 있습니다. 전자는 PHS가 지원하는 모든 연구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될 때 기관 차원의 검증을 담당하고, 후자는 연구부정행위 예방, 연구진실성 함양, 연구기록의 보호, 연방정부의 연구자원의 보존 및 대중의 신뢰 확보를 위주로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p> <p>ORI는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를 뉴스레터를 통해 공지하고, 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연구윤리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연구윤리 인식 제고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그 성과가 높습니다.</p>
Q69	<b>연구자 자녀의 논문 저자 참여 여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b>
A69	<p>일반적으로 저자 표기란의 소속이나 직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만 최근 미성년자 공저자 표기를 보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2018년 7월에 개정된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연구자와 대학의 역할과 책무로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대학 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p>
Q70	<b>4차 혁명과 관련된 연구윤리는 무엇이 있나요?</b>
A70	<p>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터, 모바일 인터넷과 빅데이터가 추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는 이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사회에게 큰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빅데이터의 수집과 처리과정에서 윤리 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개입되어 영향을 미친다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공지능 챗봇인 테이(Tay)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테이는 혐오 발언을 학습하고 이를 스스로 반복 산출한 것처럼 특정한 차별 혹은 차별 기제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신용 거래 및 대출, 고용 후보자에 대한 평가, 특정 목적을 위한 인물 선별 및 추천 검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연구윤리의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는 과정 및 데이터에 노출되는 과정에서의 편향성 그리고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p>

Q71	<b>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미술치료에서의 윤리 제한은 무엇인가요?</b>
A71	<p>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미술치료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다고 할 때 연구대상자가 사람이므로 이것도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간대상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에게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미술치료에 참여하는 대상이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취약한 연구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p> <p>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미술치료의 경우, 연구대상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대상자와의 대화나 여러 활동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심리적으로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또는 위험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만일 있을 수 있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p>
Q72	<b>공동 제1저자(제1저자가 2명)가 있을 수 있나요?</b>
A72	<p>일반적으로 제1저자는 해당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통상 1명인데, 연구의 특성에 따라 중요한 역할이 2군데 이상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질 경우, 제1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므로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저자표시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여 이에 따르면 된다고 봅니다.</p> <p>이와 유사하게 교신저자도 공동으로 맡은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참고해 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널 가이드라인에 교신저자 허용 인원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투고 전에 사전 질의 한다. 2) 한 논문의 서로 다른 연구를 맡아 협력 연구를 하는 경우, 각 연구실에서 한 명씩 교신저자를 두어 독자에게 서로 다른 연구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1저자(이자 교신저자)가 학계를 곧 떠날 수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거나 박사후연구원일 경우, PI가 공동 교신저자가 되어 대신 독자의 질의에 답하고 부가 리소스에 대한 요청을 해결한다. 4) 저널은 연구의 특성에 따른 저자의 필요조건을 수용하여 저자 가이드라인에 교신저자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여야 한다.</p>
Q73	<b>학생 대상 연구에 심의면제가 가능한가요?</b>
A73	<p>학생을 포함한 인간대상 연구에서 서면동의를 필수적인데,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연구 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연구대상자의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p>

	<p>연구계획서를 검토하는 IRB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이 인간대상 연구자에게 최소 위험 이하의 불편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이거나 생명윤리법이 정한 심의 면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IRB 심의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기관 IRB(기관 내 미설치 시 공용IRB)에 문의하셔서 IRB 심의 및 동의서 면제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또한 동의서 취득의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셔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p>
<p>Q74</p>	<p><b>연구윤리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상위 기준이 무엇인지요?</b></p>
<p>A74</p>	<p>연구윤리의 문제는 학문 분야별 특성이나 해당 쟁점이 되는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윤리의 일반적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최상위 기준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의한 연구 결과물에서의 연구윤리 기준의 적용은 교육부나 과기정통부 등 정부의 연구비 지원 기관의 연구윤리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의 연구윤리에 관한 문제는 대학이나 기관의 자체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p>그렇지만 해당 사안에 연구윤리 규정을 적용할 때, 당시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자체 및 다른 기관의 관련 규정, 학계에서 합리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p>
<p>Q75</p>	<p><b>논문에서 자기표절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범주가 어떻게 되나요?</b></p>
<p>A75</p>	<p>연구의 특성상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데이터 및 중요한 연구 내용을 후속 저작물에서 활용하는 것은 연구의 심화 및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p> <p>그렇다면 이때 재활용되는 분량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특히 어느 정도 이내로 재활용할 때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한 양적 기준이 일반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출판윤리협회(COPE)에서는 후속 저작물의 창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이전 저작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논문을 구성하는 서론이나 연구방법론(선행연구 리뷰섹션)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전 저작물의 내용을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가져다 쓸 수 있는데 이때 출처를 밝히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연구의 주제나 목표를 감안할 때 중복될 여지가 없는 DATA SET이나 이에 대한 해석 및 논의, 결론 부분, FIGURE나 TABLE에서는 이전 저작물과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 불가피하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p>

Q76

사회과학연구에서 다량의 설문지 조사를 이용한 연구 방법 시 IRB 승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법 제2조제1호) 즉, “연구”를 위해서 연구 대상자에게 1) 어떤 중재(intervention)를 주고 그 효과를 보는 연구를 한다거나, 2) 대면 설문조사, 관찰연구, 면담 등을 통해 해당 대상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서 연구를 한다거나, 3)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를 한다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합니다.

A76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이든 학과이든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인간대상 연구에 속하므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설문조사 연구 중 심의를 면제할 수 있으려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1)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2)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3) 조사 내용도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설문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누구이고 어떤 방법 및 절차를 통해 수행하는지가 중요하므로 IRB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온라인 조사에서도 일반 조사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험(예: 사생활 침해,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대상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계획하는 경우 계획서에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 취득, 연구대상자의 기밀보장, 연구대상자에게 가능한 위험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대면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되어 대상자에 관한 개인 정보를 얻거나, 대상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는 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즉, 온라인 설문조사가 포함된 연구라면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IRB가 연구대상자 집단, 설문내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에서의 적법한 동의가 무엇인지 심의 및 승인합니다. 자신의 연구 내용이 IRB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할지가 모호할 경우에는 연구자가 속한 IRB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77	<b>시약이나 장비 평가 시 식약처 임상시험 관련 절차가 필요한가요?</b>
A77	<p>임상시험은 의약품을 개발, 시판하기에 앞서 그 물질의 안정성과 치료 효용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체내 분포, 대사 및 배설, 약리 효과와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부작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합니다.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시험은 시작 전 단계부터 허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승인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에 따른 위험 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잠재적인 치료적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IRB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상 시험에 참여한 대상자는 권리와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p> <p>질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시약이나 장비가 신약후보물질 또는 의료기기로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여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임상 시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보면,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와 실시기관 내 IRB 승인 신청을 하면 되고, 이후 이 두 기관에서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세밀히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계획서가 승인되면, 임상시험 의뢰자는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책임자에게 임상시험 실시를 요청하게 되고 시험책임자는 대상자에게 임상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식약처의 신약후보물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해 시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시판허가를 받은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IRB에 직접 문의를 해보기 바라며, 추가적인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의약품 동등성 시험 기준(2019. 12. 30 시행)을 참조하기 바랍니다.</p>
Q78	<b>다른 나라의 연구윤리 규정 위반 처벌 법률 상황은 어떤가요?</b>
A78	<p>세계 각국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위조, 변조, 표절은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입니다.</p> <p>연구윤리 규정에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역시 국가마다 다양하여 한마디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즉, 연구부정행위가 고의적이지 않고 단순 실수나 무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을 때는 경미한 처벌 및 제재에 그치지만, 연구부정행위가 고의적이고, 무모하며, 반복되며, 학계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경우에는 매우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 교수, 실험 데이터 조작으로 징역 4년 9월 및 벌금 750만 달러 등이 있습니다.</p>



Q79	<p><b>이차자료 사용 시 면제 IRB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b></p>
A79	<p>IRB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간대상 연구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인간대상 연구는 반드시 IRB 심의 대상이지만 인간대상 연구가 아닌 경우는 IRB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은 연구는 연구가 아닌 것(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실태 조사, 역할 조사 등 일반화 가능한 지식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아닌 경우), 출구조사나 여론조사와 같이 단순한 설문조사, 시장 조사나 제품 만족도 조사와 같은 기업 활동과 관련 조사 등입니다. 인간대상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라도 연구자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p> <p>심의면제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따라서 질의한 이차자료를 위에서 말한 3가지 유형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면 IRB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p>
Q80	<p><b>IRB가 직능단체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연구를 불허하면 이것은 IRB가 연구윤리를 어긴 건가요?</b></p>
A80	<p>IRB는 연구계획서 심의와 연구 감독 과정에서 위원의 이해충돌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해당 위원이 다음과 같은 이해충돌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충돌의 존재 여부만으로 연구의 허락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해당 이해충돌이 그 연구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평가해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심의 대상인 연구에 해당 위원이 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li> <li>② 해당 연구에 IRB 위원이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li> <li>③ 해당 연구를 지원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에 해당 IRB 위원이 주식이나 지분, 자문 등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li> <li>④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해당 IRB 위원이 특정한 긍정적/부정적 관계(예, 친족 또는 혐오 관계)에 있는 경우</li> </ol> <p>IRB가 연구계획서를 승인하지 않는 자체가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능단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IRB와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단체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타당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p>

Q81	<b>올바른 연구문화를 위한 연구윤리와 생명윤리의 상호보완성은 무엇인가요?</b>
A81	<p>연구윤리의 범주에 인간대상 연구에서 연구자가 알고 지켜야 할 내용과 실험 동물 윤리가 포함되므로 연구윤리와 생명윤리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기본법을 통해 IRB를, 동물보호법을 통해 IACUC를 규제하고 있으며,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포함한 연구진실성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구진실성 확보에 초점을 두는 연구윤리와 IRB와 IACUC 등 생명윤리 관련 이슈는 별개의 것처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구윤리와 생명윤리는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연구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서 연구윤리의 확립, 더 나아가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함께 연계하여 추구되어야 할 것들입니다.</p>
Q82	<b>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설문조사인 경우 심의면제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나요?</b>
A82	<p>IRB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간대상 연구에는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은 연구는 연구가 아닌 것(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실태 조사, 역할 조사 등 일반화 가능한 지식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아닌 경우), 출구조사나 여론조사와 같이 단순한 설문조사, 시장 조사나 제품 만족도 조사와 같은 기업 활동과 관련 조사 등입니다. 인간대상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라도 연구자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p> <p>인간대상 연구에서 심의 면제가 되는 경우, 설문조사가 간단해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심의 면제가 됩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첫째,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둘째,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입니다.</p>
Q83	<b>사람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도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요?</b>
A83	<p>IRB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간대상 연구에는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는 반드시 IRB 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은 연구는 연구가 아닌 것(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실태 조사, 역할 조사 등 일반화 가능한 지식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아닌 경우), 출구조사나 여론조사와 같이 단순한 설문조사, 시장 조사나 제품 만족도</p>

	<p>조사와 같은 기업 활동과 관련 조사 등 입니다. 인간대상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라도 연구자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p> <p>인간대상 연구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의 면제가 됩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첫째,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둘째,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의면제가 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p>
Q84	<b>경험사례 연구할 때 연구 윤리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b>
A84	<p>경험 사례 연구 중 구체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나 서면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할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때 연구자가 알고 준수해야 할 것은 바로 인간대상 연구이므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IRB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승인받은 대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대상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내용이나 참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설명문을 통해 자발적인 서면동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기에 미성년자나 취약한 연구대상자가 포함될 경우, 법정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대상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존중하고 그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 위험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실천해야 합니다,</p>
Q85	<b>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자료의 활용과 저작권은 어디까지 허용가능한가요?</b>
A85	<p>코로나 19 등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온라인 강의)이 활성화 되면서 이때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종종 발생하여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업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사용할 경우,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강의 자료에 활용된 동영상이나 그림, 사진, 이미지 등은 출처를 밝히더라도 초상권이 우려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은 원저자에게 개별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할 때 무단 복제나 배포, 전송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저작권법에 의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p>온라인 수업에서 사용되는 강의 자료는 수업에 참여하는 선생님과 학생에게만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의 자료실에 올라온 동영상을 수강할 때, 사전 합의 없이 복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제3자에게 전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때도 별도의 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p>

Q86	<p><b>논문 표절 기준과 검사 방법이 있나요?</b></p>
A86	<p>표절을 판단할 때, 표절 의심을 받는 사람이 표절 대상 원본을 보았을 가능성(의거 관계)과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가 대표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어구나 문장에서의 표현, 그림, 그래프, 표, 데이터 등)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는 것이므로, 두 저작물을 비교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이고 이것을 표절 의심을 받는 사람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였다면 표절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p> <p>표절을 판단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장 유사도 프로그램으로 COPY KILLER와 TURNITIN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문장을 단위로 유사율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예를 들어 유사율이 15% 이상 나오면 표절이고 그 이하로 나오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유사율이 낮지만 표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사율이 높지만 그것이 일반적 지식이면 표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p>
Q87	<p><b>임상연구에 있어서 개인정보 열람의 범위와 활용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b></p>
A87	<p>생명윤리법에 해당하는 인간대상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IRB의 심의를 거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연구에 대한 IRB의 심의에 따르면 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p> <p>생명윤리법 제2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li> <li>18.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li> <li>19. ‘익명화(匿名化)’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li> </ol> <p>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인간대상 연구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② 인간대상 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Q88	<p><b>paraphrasing의 정확한 정의 및 구체적인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b></p>
A88	<p>연구자는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타인이 작성한 텍스트를 원문 그대로가 아닌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풀어쓸 수 있는데, 이를 paraphrasing, 즉 말바꿔쓰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바꿔쓰기는 한 텍스트나 문단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의미는 유지하되, 다른 단어를 활용하여 다시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동일한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은 타인의 논문이나 책에 있는 내용을 연구자 자신의 표현으로 짧게 간추린 것을 말한다면, 통상 말바꿔쓰기는 원문의 분량과 비슷하게 다시 진술하기 때문에 요약보다는 분량이 더 많습니다.</p> <p>말바꿔쓰기 표절이란 타인이 쓴 원문을 그대로 가져다 활용하지 않고 연구자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원문의 핵심 아이디어나 논지가 남아있음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논지 전개에 필요에 맞춰 타인의 글을 말바꿔쓰기(핵심 단어나 글의 순서를 바꿈)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어야 합니다. 활용한 타인의 글 속에 있는 핵심 단어 몇 개나 문장의 순서를 바꾸었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표절로부터 벗어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자가 말바꿔쓰기를 할 때는 원문의 개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언어나 리듬을 피해야 합니다.</p>
Q89	<p><b>해외자료 재인용과 관련해서 윤리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이 따로 있나요?</b></p>
A89	<p>2차문헌 표절(plagiarism of secondary sources)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원문을 직접 본 것처럼, 원문만을 출처 표기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연구자가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보통 외국어로 된 원문(1차 문헌)을 연구자가 직접 찾아 번역하거나 말바꿔쓰기 또는 요약을 하지 않고 타인이 인용한 2차 문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원문에 대해 출처표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원문에 대해 타인이 자신의 연구 목표나 논지에 부합하게 직접 인용하거나 간접인용(말바꿔쓰기나 요약함)한 것을 연구자가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copy and paste) 2차문헌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을 직접 보고 연구자 자신이 한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p> <p>이와 같이 타인이 원문에 대해 번역, 분석 및 해석한 것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그것이 타인의 것이라고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타인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가로채는 것이기에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2차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다면, 그 원문을 찾아 2차문헌에서 인용한 내용이나 출처가 정확한 지를 확인한 후, 자신의 인용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연구자가 2차문헌만 보고 원문을 보지 않았다면 2차문헌에 대해 반드시 출처표기를 해야 합니다. 2차문헌에 있는 원문의 내용을 자신의 저작물에서 인용하고자 할 때, 그 원문의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찾아 확인해 보고 특히 2차문헌의 저자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p>



	<p>즉 원문이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원문을 직접 번역한 경우, 2차문헌의 저자가 원문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였거나 독특한 표현으로 요약 및 말바꿔쓰기를 한 경우일 경우에는 원문과 2차문헌의 출처를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2차문헌 표절은 연구자가 원문을 보지 않았으면서도 본 것처럼 거짓을 말하거나 원문을 소개하는 2차문헌 저자에 대한 업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2차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지만, 2차문헌 저자의 해석이나 글쓰기가 마음에 들어 그대로 인용하고자 할 때 원문과 2차문헌의 출처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p>
<p><b>Q90</b></p>	<p><b>첨생법과 관련된 연구윤리 이슈는 어떤 것이 있나요?</b></p>
<p>A90</p>	<p>첨생법이란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줄인 말입니다. 이는 재생의료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첨생법이 적용되는 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유전자치료·조직공학치료 등입니다. 즉 줄기세포, 면역세포, 체세포 치료제, 이종장기 개발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첨생법은 까다로운 임상시험 및 신약 허가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코로나 19흐름에서 소외된 제약사의 수혜가 확대되고, 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며, 임상속도가 빨라져 상품화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p> <p>그러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하므로 환자들을 부작용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첨생법에 따르면, 유전자 치료제는 15년, 이종장기는 30년, 유전자 발현과 관계없는 성체 줄기세포는 투약 이후 5년의 추적 조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기업에는 장기 추적 조사가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상 1상부터 추적 조사가 의무라 비용 대비 효용성에 물음표가 붙는다는 게 업계 일부의 시각입니다.</p>
<p><b>Q91</b></p>	<p><b>연구윤리와 관련한 이슈를 연구자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b></p>
<p>A91</p>	<p>연구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나 문제를 연구자들에게 빠르게 전파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홈페이지에 연구윤리 섹션을 별도로 구성하여 연구윤리 관련 규정, 연구윤리 관련 이슈나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 탑재, 연구윤리 관련 Q/A 코너 운영</li> <li>2) 대학이나 연구기관 자체로 정기 연구윤리 교육이나 특강을 통해 관련 사례의 전파 및 경각심 고취</li> </ol>

	<p>3) 학부나 대학원 수업 또는 교수와 연구자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해서 관련 사례 공유 및 토의</p> <p>4) 학술지나 학술발표 대회에서 관련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 분석한 후, 기록을 통해 공유</p>
<p><b>Q92</b></p>	<p><b>논문 유사도 검사 기준은 무엇인가요?</b></p>
<p>A92</p>	<p>표절을 판단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장 유사도 프로그램으로 COPY KILLER와 TURNITIN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문장을 단위로 유사율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p> <p>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유사율이 곧바로 표절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빠른 속도로 자신의 글쓰기에서 혹 의도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누락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율이 15% 이상 나오면 표절이고 그 이하로 나오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유사율이 낮지만 그 부분이 원저작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이라면 출처표기 없이 활용하는 것은 표절이 되며, 유사율이 높지만 그것이 일반적 지식이면 표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p>
<p><b>Q93</b></p>	<p><b>연구윤리의 교육현장 적용 수준과 범위 및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b></p>
<p>A93</p>	<p>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소속 구성원들의 연구윤리 인식 제고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부나 과기정통부 등 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에 따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러한 지침이나 정책을 잘 준수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인센티브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음</li> <li>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 제고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연구윤리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면 반짝 주목하였다가 다시 무관심의 대상으로 되곤 하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li> <li>3) 현재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도는 양호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하고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음</li> <li>4) 연구윤리 인식 제고를 위해 연구자 대상 연구윤리 교육을 하고 있지만 특강 형식으로 단발적으로 이뤄져 지속적인이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이 요구됨</li> <li>5) 최근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해 대학이나 기관의 평가에 연구윤리 요소를 포함하고자 하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곧 반영될 것으로 보임</li> </ol>

Q94	<b>인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입 시 연구윤리 대응 방법이 있나요?</b>
A94	<p>‘인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입’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나,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와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를 의미한다고 보면, 전형적인 인간대상 연구이므로. 생명윤리법에 따라 해당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IRB에 해당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연구대상자를 위한 설명문을 작성하여 연구 전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인 서면동의(전자문서를 포함)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여야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p> <p>설명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인간대상 연구의 목적, 연구대상자의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익,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와 철회에 관한 사항, 기타 IRB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p>
Q95	<b>인간대상 연구 시, 병원 간호 기록지 등은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b>
A95	<p>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 연구에서 필요한 동의서는 연구대상자 동의서 및 설명문입니다. 연구자는 인간대상 연구를 하기 전에 서면동의서(전자문서 포함) 및 설명문을 작성하여 IRB 심의를 받아야 하며, 만일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에는 법적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서면 동의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제목 및 목적</li> <li>2) 연구자 성명, 소속기관 및 연락 담당자 관련 정보</li> <li>3) 연구비 지원기관</li> <li>4) 연구로 인해 연구대상자가 해야 할 일(가능하다면, 선택 가능한 대안)</li> <li>5) 연구 참여로 인한 잠재적 위험과 이익</li> <li>6)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기밀성에 관한 사항</li> <li>7)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참여 거부의 권리, 철회의 권리</li> <li>8) 연구 참여에 대한 비용 및 보상</li> <li>9)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연구자 또는 기관위원회의 연락처</li> <li>10) 동의권자, 법정대리인 및 연구자의 서명란, 서명 일자</li> <li>11) 그 밖에 기관위원회 또는 공용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li> </ol> <p>‘병원 간호 기록지’가 위의 6)번에 해당된다면 서면동의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그 활용에 대한 기관(병원)의 규정이 있을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관 규정 및 소속 IRB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Q96	<p><b>논문 표절율의 기준을 어떠한 면을 기반으로 보아야 하나요?</b></p>
A96	<p>표절을 판단할 때, 표절 의심을 받는 사람이 표절 대상 원본을 보았을 가능성 (의거 관계)과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가 대표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어구나 문장에서의 표현, 그림, 그래프, 표, 데이터 등)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는 것이므로, 두 저작물을 비교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이고 이것을 표절 의심을 받는 사람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였다면 표절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p> <p>표절을 판단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장 유사도 프로그램 으로 copy killer와 turnitin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문장을 단위로 유사율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예를 들어 유사율이 15% 이상 나오면 표절이고 그 이하로 나오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유사율이 낮지만 표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사율이 높지만 그것이 일반적 지식이면 표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p>
Q97	<p><b>이의신청 단계의 회의 및 조사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b></p>
A97	<p>현재 교육부나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의신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조사 진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p> <p>이의신청의 처리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이것이 타당한 근거에 의한 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본조사위원회에서 검증할 때 이를 놓쳤거나 새로운 증거에 의한 의견 제시인지를 검토하여 조사가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을 수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본조사위원의 보강 또는 새로운 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핵심은 이의신청을 수용하였다면 제보자든 피조사자든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판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p>
Q98	<p><b>연구윤리의 범주를 어디까지 인지(숙지)해야 하나요?</b></p>
A98	<p>연구자로서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전반에서 무지, 실수, 고의 등으로 연구부정행위든 연구부적절행위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p>

	<p>연구자의 연구의 중점이나 방법, 연구의 형태 등에 따라 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테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연구자에게는 IACUC에 대한 지식과 실천 스킬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인간대상 연구를 하지 않는 연구자에게 IRB에 대한 규정이나 실천 방안에 대한 앎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로 문헌을 토대로 연구하는 인문학자들에게 실험노트 작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의 모든 내용에 대해 세밀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구 분야의 특성이나 연구 방법 등에 따라 연구자별로 알아야 할 연구윤리의 범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연구부정행위 범위,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과 추구하는 가치, 출판윤리, 데이터 관리, 이해충돌,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Q99</p>	<p><b>에듀넷 등에 올라온 교수-학습관련 동영상(교수학습 우수사례, 교사 및 학생의 얼굴과 행동이 보임, 3년 이상 시간이 지난 자료)을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경우, IRB 심의 대상인가요?</b></p>
<p>A99</p>	<p>질의한 내용을 보면, 인간대상 연구의 유형 중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즉 연구대상자를 직접,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IRB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에는 연구에 활용한 자료 중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익명화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p> <p>만일 질의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라고 해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된 연구라면 인간대상 연구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데이터 수집 후 3년 이상이 지났다고 해도 IRB 심의 대상입니다.</p>
<p>Q100</p>	<p><b>비대면 상황에서 연구윤리 위협상황은 무엇이 있나요?</b></p>
<p>A100</p>	<p>비대면 상황에서 인간대상 연구를 한다고 할 때에도 IRB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잘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 인간대상 연구를 할 때 데이터 획득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도 연구대상자의 모집이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온라인 설문 조사 전문 업체를 통해 설문을 하게 될 때, 전자서명을 받게 되면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서면 동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온라인 상에 설명문을 탑재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Q101	대상자를 동일하게 하여 두 개의 실험을 진행할 때 각각의 IRB가 필요한가요?
A101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를 동일하게 하여 각각 두 개의 다른 실험을 진행하므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각각의 연구의 목적, 대상, 기간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한번만 IRB 승인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속 IRB에 문의를 하여 그 판단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Q102	유전자 조작 연구윤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위적 유전자 조작 실수에서 유발되었다 하는데 본인 또한 유전자 조작 연구에 참여한 경험으로 보아 충분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연구 영역의 연구윤리 기강 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판단도 해 봅니다. 그러나 연구윤리의 한계를 분명한 라인 설정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답이 궁금합니다.
A102	<p>유전자 편집 기술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유전자 조작 연구 및 활용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 기술은 강력한 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연구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아, 난자, 정자, 태아에 유전자 조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명윤리법에서 다루고 있는 “유전자 치료”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연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생명윤리법 또한 그 내용에 한계가 있기에 입법 및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야 할 것입니다.</p> <p>생명윤리법 제2조제16호 "유전자 치료"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p> <p>제47조(유전자치료) ①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li> <li>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li> </ol> <p>②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p> <p>③ 유전자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Q103	<b>연구과제 심사에서 이해당사자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b>
A103	<p>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li> <li>2. 제1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li> <li>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li> <li>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li> <li>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li> <li>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li> </ul> </li> </ol>
Q104	<b>IRB 신청 시 큰 연구 주제에 대한 IRB 신청 후 나머지 소주제도 다 IRB 신청을 해야 하나요?</b>
A104	<p>IRB 승인 받은 후 연구자는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일, 연구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획득한 IRB에 변경 승인을 획득한 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큰 연구 주제와 나머지 소주제’가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연구내용(연구 대상자,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가 미치는 영향 등)에 차이가 있다면 개별 연구계획서로 IRB 승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연구내용에 따라 승인받은 연구 계획서의 변경 승인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연구계획서를 검토하는 IRB에서 변경 승인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IRB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 후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기관의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큰 연구주제와 나머지 소주제’가 논문 출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규모가 큰 연구의 경우 하나의 연구계획서로 심의를 한 후에 2~3개의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계획서에 향후 해당 연구의 후속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고, 연구대상자의 설명문 및 동의서에 해당 연구 이외에 다른 연구에도 수집된 자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2차적 사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 부분에 대한 동의도 얻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IRB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에 위 내용이 명시되었다면 가능합니다.</p>

Q105	<b>공동저자의 저자표기 문제가 궁금합니다.</b>
A105	<p>연구자들은 특정한 프로젝트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원을 지닌 동료들과 공동연구를 협력하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표기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시 저자표기에 대한 문제를 낳지 않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자표기 원칙과 순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충분히 합의 후 공동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저자표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최선의 길입니다. 연구의 모든 단계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저자표기를 할 것인지 한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에게도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견일치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기여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누가 제1저자로 실릴 것 인지, 이름을 어떤 순서로 표기 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중요도 순으로 이름이 기재되는 것이 올바르며 실릴 저자 순서에 대한 기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p> <p>추가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배포한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amp;o_menu_no=423&amp;page=&amp;nts_no=136927&amp;nts_cat=REPORT_L_04&amp;search_type=NTS_TITLE&amp;search_keyword=&amp;nts_cat=REPORT_L_04">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amp;o_menu_no=423&amp;page=&amp;nts_no=136927&amp;nts_cat=REPORT_L_04&amp;search_type=NTS_TITLE&amp;search_keyword=&amp;nts_cat=REPORT_L_04</a></p>
Q106	<b>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연구 수행 전에 준비해야 할게 뭐가 있나요?</b>
A106	<p>연구자 간 공동의 연구 목표나 연구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인식하여야 합니다. 연구자의 경험 및 장점을 고려하고 연구의 범위와 내용 관련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른 업적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를테면 저자표기에 있어 저자의 순서를 합의를 통해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이의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합의해야 합니다.</p>
Q107	<b>국내 연구윤리 문제 중 최우선 해결 사안은 어떤 것인가요?</b>
A107	<p>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 유형은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20년 대학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수준 조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부당한 저자표시(논문 대필, 자녀 끼워 넣기)가 가장 심각하고, 그 뒤를 이어 표절, 연구노트(실험 데이터) 작성 및 관리 부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내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은 부당한 저자표시, 표절, 연구노트 작성 부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p>

Q108	<b>패널조사의 경우 연구자료 보존기간이 일회성 연구와 차이가 있나요?</b>
A108	<p>패널조사의 경우에도 그것이 인간대상 연구와 관련한 데이터 및 자료일 경우, IRB에서 규정한 연구 자료의 보존기간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인간대상 연구자는 연구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 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후속 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IRB의 심의를 거쳐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널조사 기관이 패널조사 자료 보관과 관련한 규정을 갖고 있을 때 이에 따르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규정에 의하면, 패널조사 자료의 제공은 통계청 승인 시 공표 시점에 맞춰 제공하고, 사전 제공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이용기간은 1년이며, 자료를 임의로 타인에게 복제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Q109	<b>포스트 코로나에 도래한 지금, 통상적인 윤리의 기준을 넘어서야 하는 연구(임상실험 등)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문화 향유 공간과 더불어 공공장소에서의 효과(실험 또는 검증)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온다면, 윤리의 기준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요?</b>
A109	<p>인간대상 연구로서 공공장소에서의 효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IRB의 심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지만 특히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연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자발적인 동의 획득</li> <li>2) 연구대상자의 인격 및 개인의 권리, 자기결정권 존중, 그리고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li> <li>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불편의 최소화. 만일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대상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각 중단</li> <li>4) 취약한 연구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를 해야 함</li> </ol> <p>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목적이라고 해도 임상 연구의 안전성이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불안 요소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공장소에서의 임상연구(실험 또는 검증)는 생명윤리 기본 규범 내에서 진행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p>
Q110	<b>도서관에서 연구 윤리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제공해야 하나요?</b>
A110	<p>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대상 학술적 글쓰기에서 올바른 인용법 관련 교육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제공</li> <li>2) 학문 분야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출처표기 및 참고문헌 표기 방법에 대한 교육 및 관련 자료 제공</li> </ol>

	<p>3) 학위 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을 최종 제출하기 전에 카피킬러 등의 문장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 분석</p> <p>4) 최근 국내외 출판윤리에 대한 동향을 담은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제공</p> <p>5)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직원 대상 연구윤리(특히 출판윤리, 저작권법 등) 교육 실시</p>
Q111	<p><b>연구 진행 시 석사의 경우 사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례를 선택해서 사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윤리로 보면 사례를 제공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공하지 않거나 선택해서 제공하는 것은 윤리에 위반되는 것인가요?</b></p>
A111	<p>질문의 초점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사례 연구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여 답을 하고자 합니다. 학위논문에서 데이터를 획득하여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고 연구 문제 해결(가설 검증)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 석사논문에서 주요한 결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데이터의 분석이나 해석을 할 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를 보다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장, 축소, 왜곡, 사실과 다르게 제시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나 연구 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의 한 유형인 변조에 해당됩니다.</p>
Q112	<p><b>해적 저널들이 있다고 하는데 해적 저널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b></p>
A112	<p>부실학술지 또는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는 정상적인 학술지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논문을 투고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료심사가 간소하거나 형식적이며, 논문 게재를 보장한다고 과대 홍보함</li> <li>2) 이메일을 통해 논문 게재를 독려함</li> <li>3) 정확한 논문 심사료나 출판 비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안내되지 않고 게재를 통보하면서 함</li> <li>4) 운영진의 이름, 소속, 직위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li> </ol> <p>추가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배포한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amp;o_menu_no=423&amp;page=&amp;nts_no=136925&amp;nts_cat=REPORT_L_04&amp;search_type=NTS_TITLE&amp;search_keyword=&amp;nts_cat=REPORT_L_04">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amp;o_menu_no=423&amp;page=&amp;nts_no=136925&amp;nts_cat=REPORT_L_04&amp;search_type=NTS_TITLE&amp;search_keyword=&amp;nts_cat=REPORT_L_04</a></p>



Q113	<p><b>하나의 실험에서 두개의 논문이 나오는 것이 윤리 규정에 위반되나요? 같은 실험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을 경우 다른 논문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b></p>
A113	<p>동일한 실험 결과에서 두 개의 논문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동일한 연구 결과를 두 논문에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져서 두 논문이 개별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학술적으로 새로운 가치 (novelty)’를 가지고 있어야 중복게재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자칫 ‘논문 쪼개기(Salami publication)’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라미 출판은 연구 수행 후 하나의 저작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고의성을 가지고 여러 논문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논문이 여러 개로 나누었을 때보다 하나로 출판되었을 때 더 일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두 논문이 하나의 논문으로 출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출판물 수를 늘리기 위해 논문을 분할하는 것은 살라미 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논문에서 5개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다른 논문에서 그 중 3개를 또 다시 결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다시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와 고찰 부분에서 많은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결론도 비슷하기 때문에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도 비슷할 수밖에 없게 되어, 뒤에 나온 논문에는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게 됩니다.</p> <p>논문 쪼개기는 대부분의 경우 애초에 하나의 연구로 출발하였으나 데이터가 다 모이고 논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논문으로 쪼개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논문은 완성도가 낮으며, 각각의 논문을 합쳤을 때에야 완성도 높은 하나의 주장이나 가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p>
Q114	<p><b>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계획이 없이 조사된 사료로 사후 연구를 시행할 때의 적절한 절차는 무엇인가요?</b></p>
A114	<p>일단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사료 취득 전에 IRB 심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소속 IRB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p> <p>만일 IRB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조사된 사료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익명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p>
Q115	<p><b>연구윤리의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b></p>
A115	<p>일차적으로 연구윤리는 연구자 및 연구공동체의 자율 규범이므로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도덕적 책임이 뒤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법령이나 규칙 등 일종의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에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어떤 제재가 있는지를 규정해 놓았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p>

Q116	<p><b>시리즈로 연구할 경우 IRB를 묶어서 심의 신청할 수 있나요?</b></p>
A116	<p>IRB는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입니다. 즉, IRB의 목적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실험자와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 보호’)입니다. 규모가 큰 연구의 경우, 하나의 연구계획서로 심의를 한 후에 여러 연구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계획서에 향후 해당 연구의 후속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고, 연구대상자의 설명문 및 동의서에 해당 연구 이외에 다른 연구에도 수집된 자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2차적 사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 부분에 대한 동의도 얻으셔야 합니다. 즉 연구계획서에 여러 연구가 가능하도록 위 내용이 명시되었다면 IRB에서 연구계획서 심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구계획서의 승인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IRB에서 판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IRB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Q117	<p><b>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어떤 부분이 강화되고 변화되었나요?</b></p>
A117	<p>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비대면 상황에서 인간대상 연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해 답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주로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구대상자에 대한 서면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 대량의 설문조사를 할 때 서면동의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도 제기되곤 합니다.</p> <p>서면동의를 반드시 참여자의 서명과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하지만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개인식별정보(보상용 전화번호나 이메일 수집 포함)를 연구자가 수집하지 않아야 하고 동의 여부만 표기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서면동의 면제 사유에 해당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이를 표기해서 제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면동의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는데 이때 전자문서라 함은 이메일로 동의서를 받는 것도 포함(서명 없이 이름만 기입한 동의서도 인정함)됩니다. 그래서 대면 설문조사를 기피해야 하는 경우에 이메일로 동의서를 보내주고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여전히 인간대상 연구에서는 서면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연구자 조차도 대상자의 실명을 알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연구를 할 때에만 인정됩니다.</p> <p>다시 말해 인간대상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자발적인 서면 동의는 필수이므로 온라인에 설명문을 제시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할 때 온라인 상의 동의란에 체크를 한 후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 면제 신청서를 IRB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용 연구참여 동의서를 활용하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p>

Q118	<b>타 기관에서 설문조사로 연구된 데이터를 개별 논문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b>
A118	타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된 데이터는 그 기관에 소유권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 허락을 받고 적절하게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물론 그 기관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제3자의 활용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이때에도 설문조사 결과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있을 때에는 익명화하여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119	<b>메타분석 등의 2차 자료 분석에서 기관 IRB를 받아야 하나요?</b>
A119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침습적 개입(물리적 조작)이나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연구라면 인간대상 연구가 아니므로 IRB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지 않는 연구,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는 심의 면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질의한 메타 분석의 연구가 IRB 심의 면제에 해당되는지를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Q120	<b>중등학생과 연구자 간 상호협력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b>
A120	<p>질문의 초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미성년자와 성인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를 했을 때 그 업적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을 하겠습니다. 공동연구에서 연구원의 자격은 나이, 성별,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 지식, 경험, 기술 등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등학생이라고 해서 해당 연구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도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도 부당한 것입니다.</p> <p>중등학생이 참여한 연구 결과에서 업적 배분이란 주로 저자로 등재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순서가 적절한가에 귀결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중등학생이 저자 자격에 해당하는 지적인 기여를 실질적으로 해야 하며, 그 기여의 정도에 따라 합당하게 저자 순서를 부여하면 됩니다. 저자로서의 자격에 해당하는 역할이 아닌 단순한 실험 보조, 단순 통계 처리 도움, 언어적 교정의 역할로는 저자로 등재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배포한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amp;o_menu_no=423&amp;page=&amp;nts_no=136927&amp;nts_cat=REPORT_L_04&amp;search_type=NTS_TITLE&amp;search_keyword=&amp;nts_cat=REPORT_L_04">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amp;o_menu_no=423&amp;page=&amp;nts_no=136927&amp;nts_cat=REPORT_L_04&amp;search_type=NTS_TITLE&amp;search_keyword=&amp;nts_cat=REPORT_L_04</a></p>

Q121	<p><b>중복게재의 범위가 따로 있나요?</b></p>
A121	<p>'중복게재(또는 이중게재)'를 연구부정행위에 가까운 연구부적절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한 중복게재는 자신의 이전 연구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출처표시 없이 새로운 것처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승진, 연구비 수혜, 승진 등에 부당하게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p> <p>중복게재의 대표적인 유형은 데이터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논문에서 5개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다른 논문에서 그 중 3개를 또 다시 결과로 제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데이터를 다시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와 고찰 부분에서 많은 중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결론도 비슷하기 때문에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도 비슷할 수밖에 없게 되어, 뒤에 나온 논문에는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게 됩니다. 데이터와 텍스트의 중첩으로 인해 저작권 위반의 문제 역시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자신이 과거에 발표한 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몇 개의 문장 정도)을 강조하는 의미로 재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명확히 해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p> <p>논문 쪼개기(Salami publication)는 원래 하나의 연구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나 이를 몇 개의 논문에 나누어 발표하는 행위로서, 대부분의 경우 애초에 하나의 연구로 출발하였으나 데이터가 다 모이고 논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논문으로 쪼개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논문은 완성도가 낮으며, 각각의 논문을 합쳤을 때에야 완성도 높은 하나의 주장이나 가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p>
Q122	<p><b>이해상충(COI)이 있을 경우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b></p>
A122	<p>이해상충이란 연구자가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2차적 이해관계(재정적, 인간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1차적 이해관계(연구의 목표 달성이나 연구진실성 확보 등)를 해치는 상황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상충의 상황에 있다고 해서 곧바로 연구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누구나가 이해상충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해상충의 관계를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이를 공개하고 잘 관리하지 않아 연구윤리를 위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p> <p>이해상충으로 인한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연구자가 재정적, 인적 이해관계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표절 및 중복게재를 하거나 부당한 저자표시를 했을 때를 말합니다.</p>



Q123	<b>데이터 중복사용에 대한 부정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b>
A123	<p>중복게재의 대표적인 유형은 데이터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논문에서 5개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다른 논문에서 그 중 3개를 또 다시 결과로 제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데이터를 다시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와 고찰 부분에서 많은 중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결론도 비슷하기 때문에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도 비슷할 수밖에 없게 되어, 뒤에 나온 논문에는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게 됩니다. 데이터와 텍스트의 중첩으로 인해 저작권 위반의 문제 역시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자신이 과거에 발표한 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몇 개의 문장 정도)을 강조하는 의미로 재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명확히 해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p> <p>논문 쪼개기(Salami publication)는 원래 하나의 연구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나 이를 몇 개의 논문에 나누어 발표하는 행위로서, 대부분의 경우 애초에 하나의 연구로 출발하였으나 데이터가 다 모이고 논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논문으로 쪼개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논문은 완성도가 낮으며, 각각의 논문을 합쳤을 때에야 완성도 높은 하나의 주장이나 가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p>
Q124	<b>공통적인 기관별 연구윤리 운영 지침은 무엇인가요?</b>
A124	<p>기관별로 공통적인 연구윤리 운영 지침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이해하고 답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은 연구윤리 관련하여 구비해야 할 공통적인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윤리 관련 지침 - 연구자의 책임, 연구부정행위 범위,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등 규정</li> <li>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li> <li>3) 인간대상 연구를 위한 IRB 규정, 실험동물 연구를 위한 IACUC 규정</li> <li>4)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연구윤리교육 관련 지침이나 프로그램</li> <li>5) 연구노트 작성 규정 및 데이터 관리, 데이터 보안, 연구실 안전에 대한 규정</li> <li>6) 이해충돌 관리에 대한 규정</li> </ol>
Q125	<b>국내와 외국의 연구윤리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b>
A125	<p>연구윤리는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 표준이 있기도 하지만, 각국의 역사와 문화, 연구 환경 및 현안 등의 차이로 인하여 연구윤리 규범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국경이나 문화를 초월한 학제적, 국가 간 공동연구를 할 때 적용되는 연구윤리의 규범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나 혼란이 생기곤 합니다.</p> <p>이때 연구가 수행되는 국가 또는 책임 연구자가 속한 국가의 연구윤리 규범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한 국가의 연구윤리 규범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관련 연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p>



Q126	<p><b>같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연구교수의 퇴사와 동시에 유사(중복) 신규과제 수주 가능한가요?</b></p>
A126	<p>일반적으로 연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연구계획서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수행된 연구임에도 이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마치 처음 하는 연구인 것처럼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연구비를 수주 받는 것은 연구자가 지켜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거짓에 의한 연구비 수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p> <p>어떤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연구비 수주의 기회가 생겼다면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을 처음 하는 것처럼 제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수행된 연구를 더 심화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여 제안서를 써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현재의 프로젝트와 유사 및 중복된 내용으로 제안서를 작성해야만 할 때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밝혀야 합니다.</p>
Q127	<p><b>경영학 관련 논문 작성 시 IRB 승인 해당되는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b></p>
A127	<p>인간대상 연구에 해당되는 연구는 반드시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 규정된 인간대상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li> <li>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li> <li>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입니다.</li> </ol> <p>그러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는 반드시 IRB 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은 연구는 연구가 아닌 것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실태 조사, 역할 조사 등 일반화 가능한 지식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아닌 경우), 출구조사나 여론조사와 같이 단순한 설문조사, 시장 조사나 제품 만족도 조사와 같은 기업 활동과 관련 조사 등입니다. 인간대상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라도 연구자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p> <p>인간대상 연구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의 면제가 됩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첫째,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둘째,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의면제가 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p>

Q128	진실위에서 제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즉시 기각이 가능한가요? (예비조사 실시 없이)
A128	<p>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처를 통해 제보된 것을 담당 부서 또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제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대학의 관련 규정에 정한 제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기각이 가능합니다.</p> <p>이를테면, 피조사자 또는 연구부정행위 논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 절차의 지연, 반복,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중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를 제보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p>
Q129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질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온라인 인터뷰 시 윤리적으로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A129	<p>질적 연구 시 온라인 설문 조사의 경우, 주로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구대상자에 대한 서면동의를 정확히 받아야 합니다. 서면동의를 반드시 참여자의 서명과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하지만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개인식별정보(보상용 전화번호나 이메일 수집 포함)를 연구자가 수집하지 않아야 하고 동의 여부만 표기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서면동의 면제 사유에 해당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이를 표기해서 제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면동의에는 전자 문서도 포함되는데 이때 전자문서라 함은 이메일로 동의서를 받는 것도 포함(서명 없이 이름만 기입한 동의서도 인정함)됩니다. 그래서 대면 설문조사를 기피해야 하는 경우에 이메일로 동의서를 보내주고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여전히 인간대상 연구에서는 서면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연구자조차도 대상자의 실명을 알 수 없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연구를 할 때에만 인정됩니다.</p> <p>다시 말해 인간대상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자발적인 서면 동의는 필수이므로 온라인에 설명문을 제시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할 때 온라인 상의 동의란에 체크를 한 후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 면제 신청서를 IRB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용 연구참여 동의서를 활용하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p>
Q130	상담 연구를 할 때 연구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유의해야 할 윤리적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A130	<p>인간대상 연구를 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윤리적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대상자에 대한 존중 및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자발적 동의 획득</li> <li>2) 연구 참여 시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이익에 대한 정보 제공</li> <li>3)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의 보상</li> <li>4)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을 안내</li> </ol>

	<p>5)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면 이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안내</p> <p>6) 데이터 획득 과정에서 심리적, 육체적 불편이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p>
<p><b>Q131</b></p>	<p><b>다양하게 논문 표절에 대한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표절이란 부분에서 몇 %까지 표절인가요?</b></p>
<p>A131</p>	<p>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어구나 문장에서의 표현, 그림, 그래프, 표, 데이터 등)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는 것이므로, 두 저작물을 비교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이고 이것을 표절 의심을 받는 사람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였다면 표절로 판단합니다.</p> <p>표절을 판단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장 유사도 프로그램으로 copy killer와 turnitin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문장을 단위로 유사율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예를 들어 유사율이 15% 이상 나오면 표절이고 그 이하로 나오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유사율이 낮지만 가져다 활용하는 타인의 것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내용이라면 표절에 해당되며, 유사율이 높지만 그것이 일반적 지식이면 표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절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양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p>
<p><b>Q132</b></p>	<p><b>인터넷 상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인용할 때는 어떻게 출처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요?</b></p>
<p>A132</p>	<p>최근 연구를 할 때, 인터넷 상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 상의 자료 중에는 신뢰할 수 없는 것도 많으니 먼저 인용하고자 하는 자료들이 객관적이고 믿을만한 것인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인용의 가치가 충분할 때에만 인용해야 합니다.</p> <p>각주나 내용주 표기와 참고문헌 작성은 APA 방식, CHICAGO 방식 등 학문 분야별로 다양하나 논문이나 보고서 전체에서 하나의 방식으로 일관되게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1) 논문이나 저서: 저자명(발행연도), Title, URI 주소, 접속 연월일  Author, A. (date). Title of document [Format description]. Retrieved from https://URL, 접속 연월일</p> <p>2) 뉴스 기사나 방송 및 BLOG 자료, 그림과 표, 강의 자료 등 웹 페이지에서 인용한 자료는 그 형태를 확인 후 해당 자료에 맞게 출처표기  Freakonomics. (2010, October 29). E-ZPass is a life-saver (literally) [Blog post]. Retrieved from http://freakonomics.blogs.nytimes.com/2010/10/29/e-zpass-is-a-life-saver-literally/ 접속 연월일</p>

Q133	<b>이미 연구하여 발표한 자료로 분석하는 논문에 IRB 승인이 필요한가요?</b>
A133	<p>IRB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간대상 연구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인간대상 연구는 반드시 IRB 심의 대상이지만 인간대상 연구가 아닌 경우는 IRB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대상 연구에 해당하지 않은 연구는 연구가 아닌 것(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실태 조사, 역할 조사 등 일반화 가능한 지식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아닌 경우), 출구조사나 여론조사와 같이 단순한 설문조사, 시장 조사나 제품 만족도 조사와 같은 기업 활동과 관련 조사 등입니다. 인간대상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라도 연구자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면제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따라서 질의한 것처럼 연구하여 발표한 자료가 위에서 말한 3가지 유형을 통해 수집할 것이라면 IRB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p>
Q134	<b>메타분석 연구도 IRB가 필요한가요?</b>
A134	<p>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침습적 개입(물리적 조작)이나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연구라면 인간대상 연구가 아니므로 IRB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지 않는 연구,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는 심의 면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질의한 메타 분석의 연구가 IRB 심의 면제에 해당되는지를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p>
Q135	<b>논문의 저자 인정 여부 및 저자의 순서를 결정할 때 원칙은 무엇인가요?</b>
A135	<p>학문 분야별로 저자 자격에 대한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해당 연구에서 실질적으로 지적인 공헌(기여)를 한 사람이 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로서의 지적 기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제공, 실험 설계, 데이터의 획득과 분석, 논문의 초안 작성, 논문 초안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코멘트, 투고 논문에 대한 최종 승인, 연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동의한 경우입니다. 저자로서의 역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연구에 기여를 한 사람은 기여자로서 acknowledgment를 통해 고마움을 표시하면 됩니다.</p>

저자의 순서는 위에서 언급한 저자로서의 지적 기여에 해당되는 중요한 것을 가장 많이 수행한 사람이 제1저자가 되며, 연구진을 대표하여 논문 투고,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대한 응답, 학술지 독자들의 코멘트에 대한 응답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교신저자가 됩니다. 만일 연구자들의 기여가 동일하다면 알파벳 순서로 등재합니다.